커뮤니티 비즈니스 북 vol.6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중심형 사회적경제기업의

#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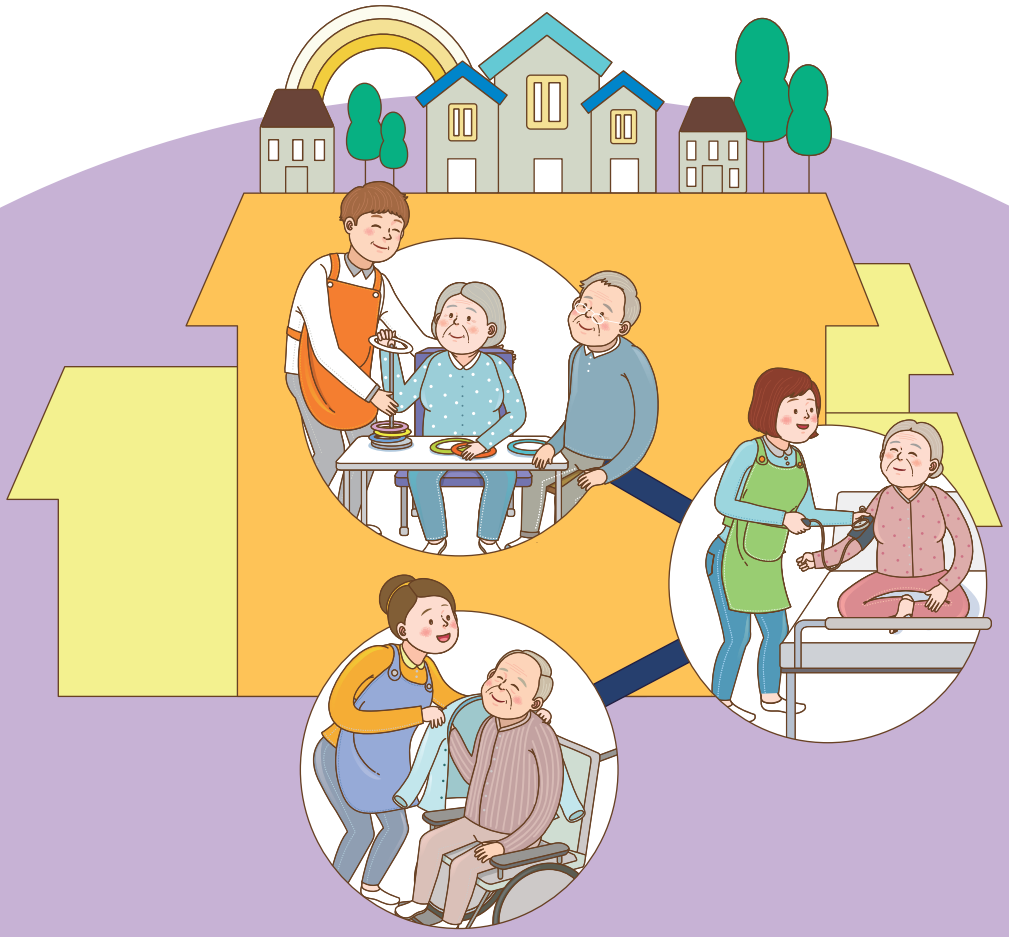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모델 가이드북은 2021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과자치협동조합'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당 가이드북 내용 중 법제도 및 정책사업 등의 기준은 2021년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중심형
사회적경제기업의

#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모델

CONTENTS


1. 가이드북 개요
1-1 추진 배경과 목적 04
1-2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 08
1-3 가이드북의 구성 09
1-4 가이드북의 한계와 기대효과 10

2. 노인돌봄서비스
2-1 노인돌봄의 현황과 정책 방향 13
2-2 노인돌봄서비스의 유형 18
2-3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주·야간보호서비스 21

3. 사례
3-1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4

4.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4-1 개념 32
4-2 이용대상 32
4-3 시설기준 32
4-4 직원의 자격 및 인력 기준 37
4-5 운영기준 45
4-6 제공 서비스 48
4-7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51

5.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로드맵
5-1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로드맵 54
5-2 지역 조사 55
5-3 비즈니스 모델 구상 61
5-4 비즈니스 모델 확정 및 로드맵 구축 74
5-5 역량 강화 76
5-6 시설 인가 78
5-7 홍보 & 마케팅 79
5-8 정보 공개 및 서비스 평가 81

6.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6-1 거버넌스 84
6-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85

7.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장
7-1 확장의 필요성 89
7-2 장기요양서비스 확장 89
7-3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의 확장 95
7-4 마을사업과의 연계 97

〈부록〉
• 참고자료
• 필수 법률 및 시행령
• 서식 자료 사이트
• 필수 서식
• 노인 복지 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 1 가이드북 개요

## 1.1 추진배경과 목적

### 1) 추진 배경

**포용적 복지국가**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 받는 국가 실현

-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 병원과 시설중심 돌봄에서 탈피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 가혹한 가족 간병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38만명), 자녀 중에서는 딸·며느리가 86% (2016년 장기요양보험 통계)
- 분절적 서비스 제공
  ⇒ 사람을 중심으로 연계·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관·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재가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 지역중심·사람중심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거점시설**

거점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 재생을 이끌어내는 시설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환경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추진 역할을 하는 시설

- 정책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되도록 각 사업마다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매년 100여 곳의 사업지가 선정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그 형태와 운영내용은 달라도 대부분의 지역에 거점시설이 조성되었거나 준비 중
  (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참고)

---

1) '도시재생 붐업사업으로서 거점시설 조성 전·후 지역이미지 변화 및 시설 효과 분석'
2018. 서광영·박진아,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19권 2호 p4

- 거점시설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그 거점시설을 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함

**커뮤니티케어**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 커뮤니티케어 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돌봄)와 국토교통부(재생), 행정안전부(지역사회 중심 자치)는 자치와 돌봄, 재생을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2018. 9. 11)

• 협약 내용 :

| | |
|---|---|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협력사항** | -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 시, 주민 주도의 보건복지, 공공 서비스 연계 협력분야(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를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선정·관리<br>-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인력. 연계협력 및 기능 강화를 함께 추진 |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협력사항** | -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시,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특화 지원하는 분야(행정안정부 협력형)를 별도로 선정·관리<br>-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가꾸기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공동체 지원센터-도시재생 지원센터 간 협력을 적극 지원 |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협력사항** | - 도시재생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동일 지역에서 실시되도록 국토교통부는 '커뮤니티 케어형 뉴딜사업'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선정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평가항목에 반영<br>-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등 복지서비스가 통합·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br>-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와 마이홈센터(LH)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케어 서비스와 주거 지원이 통합·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 | |
|---|---|
| 3개 부처 협력사항 |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및 '공공 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3개 부처 사업의 지역사회 내 융합을 모색<br>- 시범사업 추진, 부처 간 협력 등을 위해 각 분야의 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br>-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br>- 청년 일자리 지원(행정안전부), 자활사업단·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br>- 관련 사업 연계 추진계획 및 그 성과에 대해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데 적극 노력 |

그림 1-1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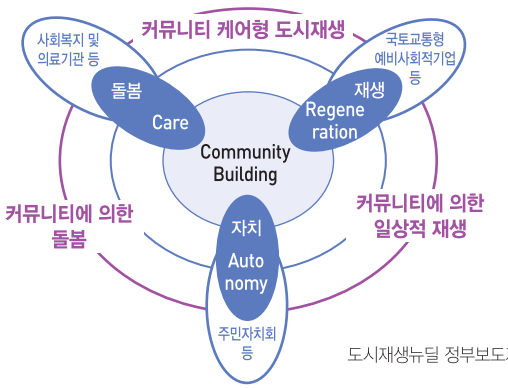


〈출처〉
도시재생뉴딜 정부보도자료, 2018.09.11

## 2) 필요성

### ●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필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2021. 5. 국토교통부

-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유지·관리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거점시설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

- 대부분의 거점시설은 3~4층 이상으로 설계되고 있으나, 1층 상업 공간 이외에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지 못함
  (일반적으로 1층에는 마을 카페, 마을 공방 등의 수익모델을 계획하지만 1층 이외의 공간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만들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부재)
- 정부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사업은 법적 시설·인력 기준이 맞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공성·지역성 확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성격**

① 공공성
-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공유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지역법인으로서 핵심요소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적립 및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② 지역성
-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조직으로 사업 대상지가 핵심 기반이자 효과 발현의 거점
- 지역사회의 유지·관리 등 ①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의 대표 법인이자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

③ 민주성

④ 개방성

- 거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발생함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사업의 필요함
-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거점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봄을 실행하는 복지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역성, 공공성을 표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임
-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특성상 사전에 충분한 교류가 없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노인을 돌보기 때문에 지역사회 친밀도를 기반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3) 추진 목적

- **마을관리협동조합 대상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모델 확산 및 적용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2021. 5. 국토교통부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크게 주거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거시설에 비해 재가시설이 돌봄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입장에서 운영하기 용이함
- 재가시설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으로 본 가이드에서는 법률상 표기인 주야간보호급여 혹은 주야간보호서비스로 표기하지만 실제 사업 분석은 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함
-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다른 시설에 비해 지역의 개별적 노인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지역안에서 자원(물적·인적)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더 장점을 가짐

## 1.2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

### 1) 활용대상

| | |
|---|---|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 - 활성화 계획 수립시 지역의 환경 제반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의 복지 수요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 모색<br>- 획일화된 거점시설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 공공서비스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는 사업의 방향으로 제안<br>-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조건들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br>- 지역 조사 등과 같이 사업 초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 상황 점검 |
| 도시재생지원센터 | - 예비사업부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이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br>-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돌봄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재생사업 기간 전반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로드맵 구축<br>⇒ 주민조직화, 공간 설계, 체계적 인큐베이팅, 실무 인력 역량 강화 |

| | |
|---|---|
| 지역주민<br>(주민협의체) | - 주민 주도 돌봄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인<br>- 도시재생 기반 거점시설에서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주민들의 역할 제시<br>-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

### 2) 활용방법

-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과업을 확인
- 도시재생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활용
- 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조사의 방법과 활용
- 다양한 개별 법률적 기준을 운영자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정리
-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수입과 지출 분석
- 마을관리협동조합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

## 1.3 가이드북의 구성

### 1) 범위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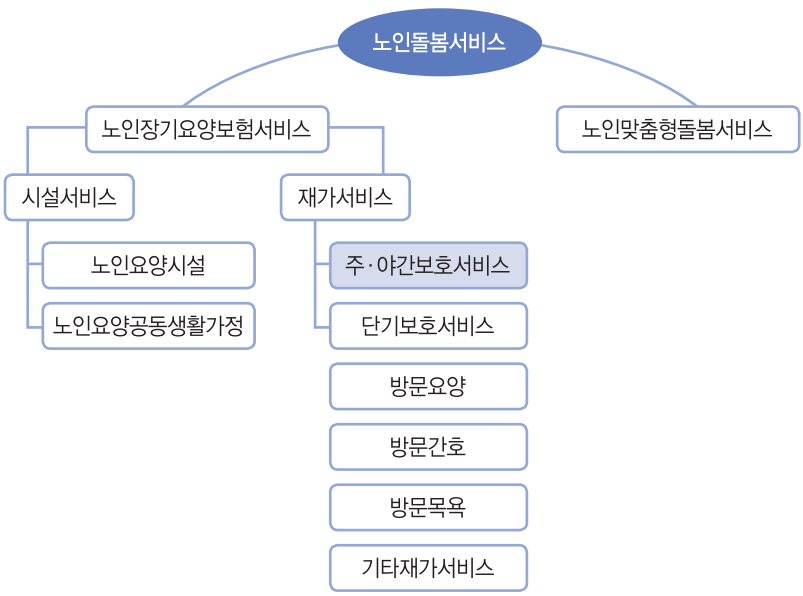


- 노인돌봄서비스 중 거점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로 기술함

● **절차적 범위**

- 주·야간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원조사에서 수익성 분석에 이르는 운영관리 영역과 인가를 위한 인적·물적 기준에 맞는 거점시설 설계 시공에 이르는 사업 준비 영역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각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기술함

### 2) 구성

| | |
|---|---|
| 노인돌봄 서비스의 이해 | - 노인돌봄서비스 정책<br>- 서비스 유형<br>- 마을관리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로써의 주·야간보호서비스 |
| 사례 |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법적 기준 | - 이용 대상<br>- 시설 기준<br>- 인력 기준<br>- 운영 기준<br>- 제공 서비스 |
|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행 로드맵 | - 자원 조사<br>- 수익률 분석<br>-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거점시설 설계<br>- 역량 강화<br>- 시설 인가 |
| 거버넌스와 돌봄서비스 확대 | - 운영 주체 간 거버넌스<br>-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br>- 돌봄서비스의 확장 방향 |

## 1-4 가이드북의 한계와 기대효과

### 1) 가이드북의 한계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 부족**

- 마을관리협동조합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 인가됨에 따라, 아직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

-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은 공공영역보다는 시장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로 공공서비스 위수탁이 주요 모델로 가이드 되고 있어, 향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 부족**

- 2018년 자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와 2020년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미흡함

- 전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은 6%이며, 특히 노인돌봄서비스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0.9%에 불과함

- 사회적경제조직은 초기 자본의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 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법적 시설 기준을 맞추기 쉽지않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진입을 하더라도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거요양서비스나 주·야간서비스보다 방문요양과 같이 공간 확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서비스 영역에 치중됨

표 1-2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구분 | 노인 돌봄 | | 영유아 돌봄 | | | 장애인 | | 건강/의료 | 가사지원 |
|---|---|---|---|---|---|---|---|---|---|
| | 장기요양 | 맞춤형 돌봄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 돌봄센터 | 활동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 의료사협 | 간병 방문지원 |
| 개소수 | 234 / 25,030 | 20 / 647 | 61 / 37,589 | 19 / 4,207 | 4 / 101 | 47 / 1,122 | 98 / 651 | 24개소 조합원 48,596명 | 64 / 466 |
| 점유율 | 0.9% | 3% | 0.16% | 0.4% | 4% | 4.2% | 15% | | 13.7% |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20.12.28. 정부합동 보도자료

## 2) 기대효과

● **거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사업의 인식 확대**

• 안정적인 거점시설 운영 모델

- 대부분의 거점시설은 3~4층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음

- 접근성이 좋은 1층은 카페나 식당 등 다양한 상업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용이한 편이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비즈니스 모델이 마땅치 않음
(대부분 4층 정도의 건물을 짓고 1층은 상업시설, 4층은 사무실, 회의실, 주민공동공간 등으로 구성하지만, 2층과 3층에 대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는 1층 외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

• 지역사회 순환경제 구조

- 지역에서 필요한 소비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생산하여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순환적 경제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 지역의 주민들이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 상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됨
- 늘어가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교육 서비스와 같은 연계 사업의 성장도 기대됨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

- 최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거점시설 관련 비즈니스 모델 중 카페, 식당 등과 같은 업종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유사업종과의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음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역적·사회적·공공적 성격에 맞는 공공영역의 사업 모델이 필요함

### ● 주야간보호서비스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사업계획 수립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계획과 소프트웨어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공간 설계 완료전에 공간의 사용 목적이 분명히 결정되어져서 사용 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의 법적 설비 기준)에 맞는 설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단계 | 주요 과업 | |
|---|---|---|
|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 거점시설 계획단계 | 지역 내 서비스 수요조사<br>지역 내 자원조사 (물적자원조사, 인적자원조사)<br>사업분석 - 비즈니스 모델 도출<br>수익성 분석 / 공간계획 수립<br>거버넌스 체계구축(노인복지관련 부서와 협의)<br>마을사업으로 결정(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 활성화 계획<br>변경 여부 확인<br>(중대 변경 사유인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br>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 |
| 거점시설 조성단계 | 세부 운영계획 수립<br>조합 총회<br>실무 체험 및 역량강화 | 법적 기준에 맞는 공간 시공과 내부 인테리어 |
| 거점시설 운영단계 | 홍보, 대상자 모집<br>사업 개시<br>정보의 공개<br>서비스 평가 | 준공 / 시설 인가 |

• 법적 시설 기준 및 수익률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

- 거점시설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수익률 분석을 통해 이용자 정원을 정하고 이를 통해 공간의 설계에 반영

# 2 노인돌봄 서비스

## 2.1 노인돌봄 현황 및 정책 방향

### 1) 현황

●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 독거노인 : ('20) 159만명 → ('35) 313만명,
  85세 이상 노인 : ('20) 77만명 → ('35) 176만명[2)]

표 2-1
독거노인 비율
〈출처〉 통계청

| | 2014 | 2017 | 2019 | 2021 |
|---|---|---|---|---|
| 65세 이상 인구(명) | 6,277,126 | 7,066,060 | 7,684,919 | 8,537,023 |
| 65세 이상 1인가구수 | 1,152,673 | 1,346,677 | 1,500,413 | 1,670,416 |
| 독거노인비율(%) | 18.4 | 19.1 | 19.5 | 19.6 |

독거노인비율 = ( 65세 이상 1인가구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 가족돌봄의 약화

- 관계망 악화 : 가까운 친익천 및 친한 친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독거 노인의 경우 증가 비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

표 2-2
노인의 가족 및 친구 이웃 유무율
〈출처〉 통계청

| | 가까운 친인척 | | 친한 친구 이웃 | |
|---|---|---|---|---|
| | 2011년 | 2017년 | 2011년 | 2017년 |
| 65세 이상 전체 | 54.4% | 46.2% | 75.2% | 57.1% |
| 독거노인 | 49.3% | 42.7% | 78.2% | 55.7% |

- 사회적 고립도 : 조사대상 인구 중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60세이상(36.6%)은 20대(18.4%)보다 2배 가까이 사회적 고립도가 높음

2)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1. 보건복지부

표 2-3
사회적 고립도
(2019년 기준)
〈출처〉 통계청

| | 전체 | 19~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
| 사회적고립도(%) | 27.7 | 18.4 | 21.0 | 26.9 | 30.4 | 36.6 |
|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 20.4 | 14.1 | 16.6 | 20.7 | 23.0 | 24.9 |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17.1 | 10.7 | 11.1 | 15.1 | 18.7 | 25.5 |

## ●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가족의 책임에서 가족·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이 전환됨

표 2-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

| 돌봄 책임 | 부모 스스로 해결 | 가족 |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 정부 사회 |
|---|---|---|---|---|
| 2008년 | 11.9% | 40.7% | 43.6% | 3.8% |
| 2020년 | 12.9% | 22% | 61.6% | 3.5% |

## ●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 2060년 노인 진료비가 최대 390조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3] (2016년 25조)

- 65세이상 의료비 부담은 공적보험의 부담뿐 아니라 개인 의료비에도 부담
  ⇒ 노인 빈곤률에 영향(2018년 기준 노인 빈곤률 43.8% / OECD 평균은 14.8%)[4]

표 2-5
65세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전체인구(천명) | 50,490 | 50,763 | 50,941 | 51,072 | 51,391 |
| 65세이상 인구(천명) | 6,223 | 6,445 | 6,806 | 7,092 | 7,643 |
| 65세이상 진료비(천원) | 222,361 | 252,692 | 283,247 | 318,235 | 359,925 |
|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원) | 1,149 | 1,275 | 1,391 | 1,528 | 1,681 |
|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원) | 3,620 | 3,983 | 4,255 | 4,568 | 4,910 |

3)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 2016.1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 2020 고령자 통계 통계청

● 도심 쇠퇴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인천광역시.2021.7월 기준)

표 2-6
인천광역시 구별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 인구 (명) | 노인인구(명) (비율) | 독거노인비율 (2020년기준) | 인구당 의료기관 의사수(10만명당) | 재가노인 복지시설 |
|---|---|---|---|---|---|
| 연수구 (신도심) | 390,636 | 39,934(10.2%) | 4.4% | 32명 | 69개 |
| 동구 (원도심) | 62,258 | 14,656(23.8%) | 12.1% | 92.74명 | 24개 |

- 도심 쇠퇴지역에서의 노인인구비중 및 독거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재가 돌봄 서비스의 지원은 열악한 편임

## 2) 정책방향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비전**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 목표

-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주거, 건강,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의 4대 핵심요소별 추진 로드맵 제시

그림 2-1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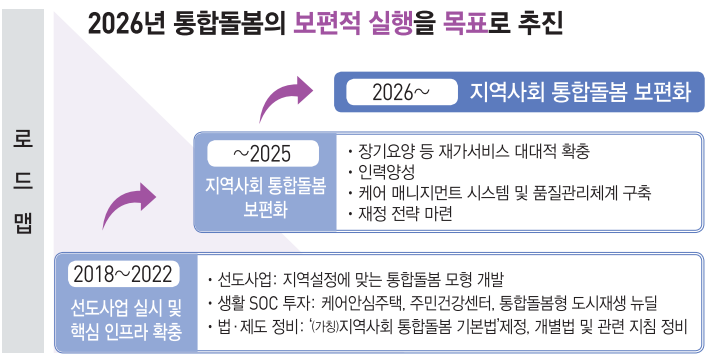


〈출처〉 지역사회통합돌봄자체추진가이드북 p2. 보건복지부. 2020

## 추진과제

표 2-7
지역사회통합돌봄
4대 핵심과제
〈출처〉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 | | |
|---|---|---|
| 4대 과제 | 주거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br>•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br>• 도시재생사업과의 융합으로 '마을소멸' 대응 |
| | 찾아가는 방문건강·방문의료 | •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 확대<br>•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제공<br>• 지역사회 기반의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관리<br>•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br>•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
| |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 •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br>- 재가서비스 이용률 확대<br>2017년 69% → 2022년 75% → 2025년 80%<br>•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품질 재고<br>•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지원 |
| | 사람중심서비스 연계 |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br>-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 고도화, 대상자 정보 공개 활성화<br>•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 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br>-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연계 하는 케어안내창구 신설<br>•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인력 대폭 확충 |

〈출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 2018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주민참여를 토대로 주민들의 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도출한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제공

##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경로당, 노인친화형 골목길 조성 등의 인프라 확충 ➡ 물리적환경조성 +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주거와 돌봄서비스)

##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 특화재생 사업

- (해당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
- (주요내용)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도록 의료 ·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주거서비스 제공

표 2-8
지역 특화재생 사업
평가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증빙서류 | 배점 |
|---|---|---|---|---|
| 공공생활 서비스 특화 (5점) | 부처연계 사업 연계 적정성 | • 부처연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적 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br>-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br>·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 활성화 계획 (안) | 2.5 |
| | 공공생활 서비스 특화요소의 적정성 | • 행정서비스,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제공 계획의 적정성<br>*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등 신축<br>• 교통망 계획,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 생활SOC 공급계획 등 연결 네트워크 구축의 적정성<br>• 대상지역 공공생활서비스 구축 행정지원체계 마련 | 활성화 계획 (안) | 2.5 |
|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5점) | 연계사업 연계 적정성 | • 부처 또는 자체연계사업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목적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br>•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br>•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 활성화 계획 (안) | 2.5 |
| |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요소의 적정성 | • 의료·돌봄·복지 등 지역주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br>*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계획<br>•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 돌봄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br>• 구성원 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 계획의 적정성 | 활성화 계획 (안) | 2.5 |

〈출처〉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2021.09

###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 도시재생사업의 물적 환경 변화를 통한 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 내 물적 환경조성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실행을 위한 실행 주체 양성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해 거점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케어 실행을 위해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림 2-2
커뮤니티케어 중심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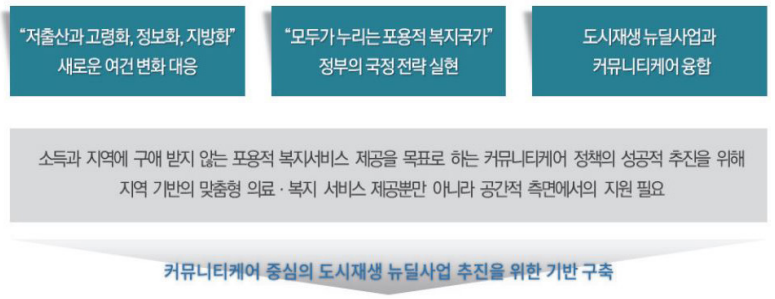


〈출처〉 커뮤니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 마련 연구 2019.08 보건복지부

## 2.2 노인 돌봄서비스의 유형

| | 구분 | 재원 | 서비스기준 | 관리 | 서비스 |
|---|---|---|---|---|---|
| 노인돌봄 서비스 | 장기요양 서비스 | 장기요양 보험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보험공단 지자체 | • 시설서비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br>•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 간호,방문목욕,기타재가 |
| |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 국비, 지방비 | 장기요양 등급자외 | 지자체 |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운용

## 장기요양등급기준

표 2-9
장기요양등급기준

|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출처〉 https://www.longtermcare.or.kr/

## 시설서비스[5)]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5) 2장에서는 노인복지법 31조에 기준으로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어 법률상에 사용하는 '급여'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급여'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했을 때 제공되는 비용(수가)를 기준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시설급여를 시설서비스로 해석하여 이해하면 된다.

###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 통합하여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그림 2-3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영역
(제공기관 수)

〈출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20 보건복지부

####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 서비스 내용

| 구분 | | 목적 | 서비스 내용 |
|---|---|---|---|
| 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 | 안전·안부확인 (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 | | | |
|---|---|---|---|
| 직접 서비스 | 사회 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 | 생활 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신체건강·정신건강 분야 생활교육 |
| | 일상 생활 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 연계서비스 |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 개선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등 |
| 특화서비스 |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
| 사후관리 서비스 |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

● **서비스 제공 시간**

-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서비스 제공 체계**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 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직영 또는 수행기관 선정·위탁

## 2.3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주·야간 보호서비스

### 1)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 **거점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다른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등)에 비해 공간을 마련하는 초기 비용의 비중이 높음
- 현실적으로 유지를 위해 적정 이용자(24인 이상)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소규모 장소에서는 사업이 어려움
- 법적 기준에 따라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안전시설 설치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함
-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이 안착되면 거점시설의 이용자 증가와 돌봄 연계 사업 확대로 거점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함

## 인력구조

-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 필수 인력 구성이 용이함
  -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15명 이상이 필요하며, 구강 위생 서비스 제공 시 치과위생사도 1명 있어야 함
  -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가 반드시 상근직원으로 필요함
  - 주·야간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혹은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3~4명 정도 필요함
-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돌봄 노력이 필요한 요양원 및 요양시설에 비해 재가서비스가 인력 충원이 용이함 (요양원은 주로 1,2,3등급 노인이 주야간보호서비스는 4,5등급 노인이 이용)

> ▶ 거점시설을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 공간으로 위탁받게 되면 초기 공간 마련의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 ▶ 매년 1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자 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음. 지역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함

## 안정적 수익 구조

-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나 지역의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기존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과의 경쟁이 발생함
-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법적 기준에 맞춰 운영 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정적임
- 특히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필수적 기구인 사무국의 운영이 여의치 못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사무 인력을 활용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국 업무의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과다경쟁으로 공급이 넘쳐 사업이 어려운 곳도 있으니 지역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법적 기준에 맞는 공간과 인력 구성을 위해서는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2) 노인돌봄서비스

### ● 관계중심 돌봄 서비스

-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신뢰가 서비스 효과와 만족도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지역주민이 지역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기에 유리함
- 대상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요구가 다를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대상자 외 대상자 가족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요구 대응과 같이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현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능함

### ● 상호돌봄

- 마을주민이 마을주민을 돌보는 상호돌봄을 통해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뿐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일상 돌봄으로 확장이 가능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에서 출발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노인공동생활가정, 케어안심주택,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같이 노인돌봄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마을이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으로 확장이 가능함
- 마을 안에서의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들간의 신뢰가 강화됨

### ● 안정적인 마을 일자리

-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지는 노인 인구가 매우 높고 노인 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함
  -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솔루션임
- 마을 내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상호돌봄에 의한 경제공동체로 확장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돌봄으로 더 많은 일자리 확대할 수 있음

# 3 사례

## 3.1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1) 배경

- 고령화 비율이 높고 지속거주 희망자가 많아 돌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지속적 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고령화율, 노인 독거 가구의 증가 등 지역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고령화와 고령 인구의 주거 및 돌봄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됨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세종시 번암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용 문제
  -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
-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 추진의 필요성
  - 기존 공급자 중심의 돌봄 센터 운영이 아닌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지역의 돌봄 관련 종사자들이 지역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이 가능해짐
  -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공공서비스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 확대가 가능해짐

### 2) 연혁

| | |
|---|---|
| 2019. 7. | -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 선정 |
| 2019. 10. |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 2020. 8. | -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출범 |
| 2020. 9. | - 커뮤니티케어 특화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연구 용역 발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 2021. 2. | - 주민협의회에 결성 |
| 2021. 4. | - 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주민 TF팀 구성 |
| | - 돌봄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 워크숍(3달동안 매주 진행) |
| | - 돌봄서비스를 기반으로 거점시설 재설계 |
| 2021. 7. 16. | - 도시재생 확대 추진 협의회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돌봄서비스 포함) 승인 |
| 2021. 7. 24. | -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

### 3) 지역 자원

#### ● 서비스 수요 조사

• 노인 인구조사

- 급격한 인구 감소
- 65세 이상 15.8%의 높은 고령화 비율

표 3-1
세종시 인구조사
(2018년)

| 구분 | 세종시 | | 조치원읍 | | 사업지(번암리) | |
|---|---|---|---|---|---|---|
| | 인구(명) | 비율(%) | 인구(명) | 비율(%) | 인구(명) | 비율(%) |
| 0~14세 | 64,822 | 20.6 | 6,060 | 13.6 | 164 | 9.9 |
| 15~64세 | 220,126 | 70.1 | 31,973 | 72.0 | 1,234 | 74.3 |
| 65세이상 | 29,178 | 9.3 | 6,410 | 14.4 | 262 | 15.8 |
| 총계 | 314,126 | 100.0 | 44,443 | 100.0 | 1,660 | 100.0 |

〈출처〉 번암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 2021년 8월 기준 조치원 전체 인구는 43,348명,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393명으로 17%로 증가 추세[6)]

• 독거 노인 조사

- 노령인구 중 21.8%가 홀몸어르신, 15.8%가 기초생활 수급자

표 3-2
조치원읍
노인 인구 조사

| |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 전체인구 |
|---|---|---|---|---|
| 인구수(명) | 5,938 | 1,292 | 230 | 46,452 |
| 비율 | 12.8 | 21.8 | 17.8 | |

〈출처〉 번암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 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및 돌봄지원 등의 안전망 필요

6) 세종종합포탈 (https://www.sejong.go.kr/)

### ● 서비스 인력 자원 조사

-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 있는 주민 : 1인
- 사회복지사 : 2인
- 간호사 : 1인
- 요양보호사 : 3인

### ● 지역의 노인 복지 관련 시설 자원

- 보건소 1곳
- 병원 : 1곳
- 요양병원 : 2곳
- 요양원 : 3곳 ⇒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 재가시설(주·야간보호센터) : 2곳
  ⇒ 2곳 모두 요양원 부설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 중
- 조치원읍 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5개소 있으나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는 위치하지 않음

###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주민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발기인 구성, 주민 욕구를 반영한 비즈니스모델 설립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 높음
- 번암1리, 번암 2리 각 부녀회, 번암1리 마을개발위원회, 생활문화강좌 참여 주민 등 다양한 마을의 구성원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함
- 지역 내 재가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적 자원 확보
- 기존의 마을공동체 활동[7]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역량도 높음

## 4) 사업내용 & 수익분석

### ● 케어안심주택

• 규모 : 거점시설 5층(428.00㎡) ※2인 1실 8채 운영으로 최대 16명 입주 가능

• 주요사업 내용

- 독거노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공동체 실현

7) 번암리 마을회관을 마을자산으로 활용하여 부녀회와 노인회등에서 운영 중

- 같은 건물 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돌봄사업과 자원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기대
- 케어안심주택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분야 통합돌봄에 관한 다양한 시도로 주민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 수립

• 운영 : 돌봄사업단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국

• 네트워크
  - 행정(세종시 복지과)와 연계: 대상자 선발 및 관리 지원
  - 지역 복지관, 세종시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등 연계

• 예상 수입 : 2인 1실 8개 공간운영 예정으로 주거급여 수준 임대비 수입 예상
(2021년 기준 3급지-세종, 1인가구 : 190,000원, 2인가구 : 212,000원)

## ● 주간보호센터

• 규모 : 거점시설 4층(428.00㎡) ※24인~30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 주요사업 내용
  - 지역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상자 (3~5등급)들의 욕구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행정, 복지관, 보건소,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 주민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 제공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 경제 선순환형 일자리 제공

• 운영 : 돌봄사업단
  - 지역 주민에 의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5인 (마을 이장1인, 사회복지사1인, 간호사1인, 요양보호사2인)
  -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한 인력 확대 계획
  - 네트워크 :행정(세종시 복지과), 지역 내 지역사회돌봄추진단(가칭), 지역병원 및 보건소

• 고용 계획: 2022년 기준 8명(예상)
  -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운전사 1명, 조리사 1명

• 예상 수입(24인~30인 기준)
  - 월 24백만원 ~ 30백만원(예상)

### 5) 비즈니스 모델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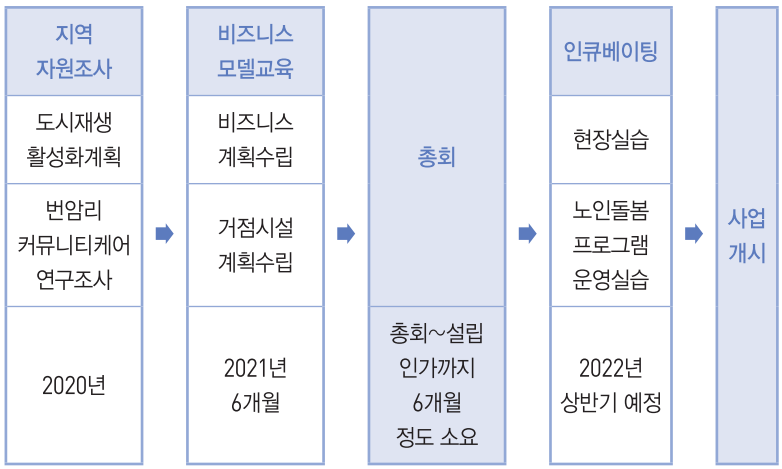


- 지역자원조사 실행과 돌봄서비스 TF팀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 조사
- 비즈니스모델 교육을 통해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사업계획서 수립
-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 사업추진위 등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 개최
- 총회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으로 확정
- 거점시설 설계에 반영
- 인큐베이팅 계획 수립

### 6) 역량 강화사업 내용

**● 실행주체 역량 강화**

- 외부 시설 위탁 교육
  - 실제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에서 실무 교육 진행
  -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서비스, 노무, 행정관련 교육 진행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인큐베이팅
  - 주민공모사업을 활용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실행
  - 노인돌봄서비스 설계, 주민 홍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실행, 사후 평가까지 직접 실행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진행

● **협동조합 역량 강화**

-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위한 조합 내 역할 분배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
- 돌봄서비스 사업과 조합의 다른 사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방안 모색

### 7)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 **거버넌스**

- 행정·현장센터·주민대표가 사업 초기부터 꾸준하게 회의 체계를 꾸려옴
- 지역 자원조사, 교육 프로세스 계획 수립, 공간 설계 전 과정을 협의를 통해 진행함

| 구분 | 역할 |
|---|---|
| 행정 | • 지역조사(수요조사, 자원조사)<br>• 노인복지과와 협의(인가와 관련된 내용)<br>• 거점시설 설계 반영 |
| 지원 조직 | •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연계와 소통<br>• 도시재생 사업 전 과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계획 수립<br>- 지역자원조사 용역 발주<br>- 돌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계<br>• 교육 및 인큐베이팅 예산 수립과 실행 |
| 주민 | • 돌봄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주체 발굴<br>- 돌봄 서비스 산업 운영 경험자, 실무 업무 경험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조직화<br>• 돌봄 서비스 사업화 계획 수립<br>- 지원조직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계획은 사업실행 계획 수립<br>• 지역사회 홍보<br>•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br>•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

● **조직체계**

- 번암 1리, 번암 2리 마을이장, 부녀회,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노인돌봄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문단의 역할을 부여함
- '지역사회노인돌봄추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내 홍보, 공공서비스의 확장 등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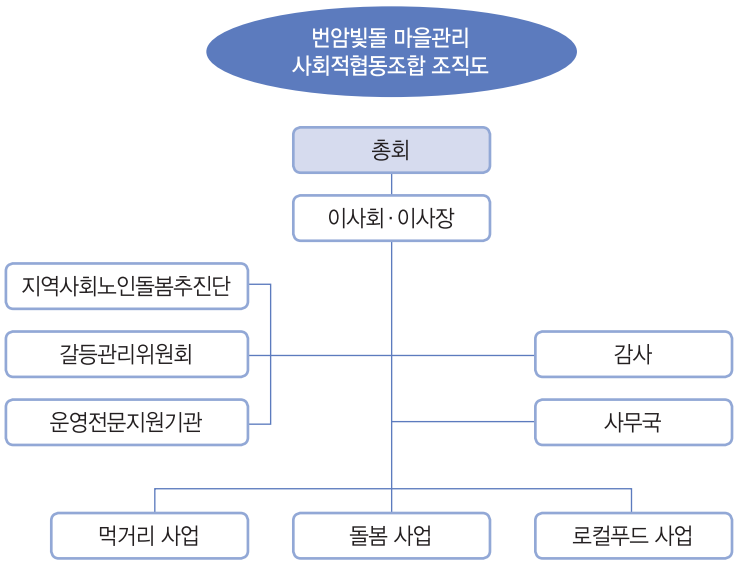


#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주사업) 및 사업계획서 (거점시설 관리계획)

제62조(사업의 종류) ① 이 마을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케어안심주택 운영관리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
3. 마을카페 운영사업
4. 공유주방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
5. 로컬푸드 및 지역상품 도소매업

-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거점시설 관리 계획

표 3-3 거점시설 활용 계획

| 1. 기본현황 | | | | | |
|---|---|---|---|---|---|
| 위치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90-1 | | | 조성시기 | 2022 |
| **2. 세부계획** | | | | | |
| **구분** | **면적** | **공간계획** | **공간운영** | **운영방식** | **지자체 지원** |
| 1층 | 96㎡ | 마을카페 | 마을조합 | 사용수익 | - |
| 2층 | 53㎡ | 공유주방 | 마을조합 | 관리위탁 | - |
| | 51㎡ | 마을카페 | 마을조합 | 관리위탁 | - |
| | | 모두의놀이터 | 지자체 | 행정직영 | - |
| 3층 | 90㎡ | 체육시설 | 마을조합 | 관리위탁 | - |
| | 88㎡ | 프로그램 및 다목적강당 | 마을조합 | 관리위탁 | - |
| 4층 | 428㎡ | 주간보호센터 | 마을조합 | 사용수익 | - |
| 5층 | 428㎡ | 케어안심주택 | 마을조합 | 관리위탁 | 위탁관리 사용료/임대료 |

〈출처〉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 4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 4.1 개념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 38조〉

• 주·야간보호서비스가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 이용자가 늘고 있음

표 4-1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경험 있음 비율
〈출처〉 통계청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
| 2016 | 87.37% | 11.29% | 7.25% | 12.65% |
| 2018 | 82.86% | 9.02% | 2.27% | 16.93% |

## 4.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면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

## 4.3 시설기준

**시설의 규모**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함

• 최소 시설 규모 = 90㎡ + (정원숫자 - 5) × 6.6㎡

예시1) 정원 24명의 주간보호시설 운영 시, 시설의 최소 연면적은 215.4㎡(90 + (24-5)*6.6)
예시2) 정원 32명의 주간보호시설 운영 시, 시설의 최소 연면적은 248.4㎡(90 + (32-5)*6.6)

-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설비 기준의 20~30% 이상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

※ 24인 정원의 경우 법적 최소 시설 규모는 215.4㎡이나, 실제 필요 공간은 260㎡이상 권장

- 침실 공간도 생활실 공간과 통합하여 시설 면적에 포함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노인복지법 제 31조 노인복지시설중 4항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필수 시설

| 구분 | | 생활실 | 침실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
| 주·야간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 | | |

표 4-2 주·야간보호 필수 시설 기준

〈출처〉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p1.

-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주 ·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하고 치매 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비 기준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함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문턱 제거, 손잡이 설비 부착, 바닥의 미끄럼 방지 설치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 설치 하여야 함

**급·배수 설비**

-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하되,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완비 하여야 함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건물의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 하여야 함
-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면제 가능함

**그 밖의 설비**

-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 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 사용 하여야 함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 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함

**생활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설치 하여야 함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 완비 하여야 함

**침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함
-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 필요함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가 되어야 함
-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함
-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해야 함.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오르내림이 자유로워야 함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설치 하여야 함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하여야 함

| |
|---|
| **사무실** |
|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 확보 하여야 함 |
| **의료 및 간호사실** |
|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확보해야함 |
| **프로그램실** |
|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 확보해야 함 |
| **물리(작업)치료실** |
|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해야 함 |
| **식당 및 조리실** |
| -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가 되어야 함<br>-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 하여야 함<br>-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 하여야 함<br>-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 **세면장 및 목욕실** |
|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br>- 욕탕 샤워기 및 세면 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확보 하여야 함<br>-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 하여야 함<br>-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 하여야 함 |
| **세탁장 및 건조장** |
|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해야하며,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방설비 대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시설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설비, 소화기구,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설치대상에 해당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노유자시설8)로 분류되는 주간보호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함.
⇒ 고정되어 있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방염처리 대상
⇒ 커튼, 카펫, 칸막이 등

**구조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 건축물 진입 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논슬립패드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상으로 한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 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경보, 피난,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4 직원의 자격 및 인력 기준

### 자격기준

표 4-3 직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br>•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의사 혹은 간호사<br>•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br>•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br>•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출처〉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3p

**시설장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법 제28장은 유기와 학대의 죄, 제 40장은 횡령과 배임의 죄〉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인력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시설장</th><th>사회<br>복지사</th><th>간호사<br>또는<br>간호조무사</th><th>물리치료사<br>또는<br>작업치료사</th><th>요양<br>보호사</th><th>사무원</th><th>조리원</th><th>보조원<br>(운전사)</th></tr>
<tr><td rowspan="2">주<br>·<br>야간<br>보호</td><td>이용자<br>10명<br>이상</td><td>1명</td><td>1명<br>이상</td><td colspan="2">1명 이상</td><td rowspan="2">이용자 7명당<br>1명 이상<br>(치매 전담실의<br>경우에는<br>4명당 1명 이상)</td><td>1명<br>(이용자<br>25명 이상)</td><td>1명</td><td>1명</td></tr>
<tr><td>이용자<br>10명<br>미만</td><td>1명</td><td></td><td colspan="2">1명 이상</td><td></td><td>1명</td><td></td></tr>
</table>

표 4-4 인력기준 〈출처〉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p.

• 시설장

-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며,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함(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함을 말함.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가 불가능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 가능함

- 공무원과 달리 겸직을 허가할 소속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 개인의 책임하에 판단할 사항이며, 그 겸직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함
-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됨
  (근무 시간 중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운영 규정이 필요)

##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도 상근 위무가 있음**

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상근위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조세 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음

**종사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 제 35조의 2**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용자 7명당 1명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인원 계산은 반올림으로 함

> 예 이용자 24인은 24÷7=3.428 이므로 3인 근무가 가능하나,
> 이용자 25인은 25÷7=3.571 이므로 4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

- 이용자가 25명 이상일 때 사무원을 두어야 함
-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음. 단 이용자 10명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 가능.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해야함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함
-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 가능.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함
2)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 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 가능.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함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 겸직 가능함

## 채용

• 공개모집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위와 상관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임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반 됨
- 채용관련사항을 가능하면 여러곳에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에 이해 채용하여야 함

  (긴급한 업무처리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에서 15일이하로 단축 가능)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시설 재무 회계 담당자는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함.

• 공개모집 예외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
-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채용 시 유의사항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 · 적용한 자
⇒ 채용공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출비율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반드시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추어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비용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인건비 지급 비율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 장기요양서비스비용
-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표 4-5
인건비 지급비율

|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br>물리(작업)치료사<br>사회복지사<br>요양보호사 | 48.3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br>물리(작업)치료사<br>사회복지사<br>요양보호사 | 58.5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br>사회복지사 | 86.6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3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br>치과위생사 | 59.5 |

〈출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의 2

•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 장기요양시설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함
-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함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장기근속 장려금

-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시설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일정기간이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산정기준

표 4-6
장기근속 장려금

| 계속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
| 금액(원/월) | 60,000 | 80,000 | 100,000 |

※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제 11조의 4

• 요양보호사 제도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10.4.26부터)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

⇒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로 결정

⇒ 고졸 이하도 가능, 외국인도 가능(출입국 관리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자)

⇒ 정신질환자, 마약,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자(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자격 제한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방법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시·도 지정)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10-2]

⇒ 일반(240시간) :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50시간):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
- 간호사(40시간): 이론 26시간, 실기 6시간, 현장실습 8시간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50시간):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현장실습 8시간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가능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50%감면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 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 가능

## 4.5 운영기준

### ● 건강관리

-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것을 받아야 함

### ●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함.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 운영
-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됨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 운영규정

-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 |
|---|
| ①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br>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br>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br>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br>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br>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br>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br>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br>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br>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 회계

-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일지
- 예산서 및 결산서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등 제반 규정
- 이용자 명부
-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 사업의 실시

-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 가능.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 가능함
-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

표 4-7
사업의 내용

| 구분 | 사업내용 |
|---|---|
| 주 · 야간 보호 서비스 |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br>•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br>•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br>• 주 ·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 단기보호 서비스 | •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br>•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출처〉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 6조

##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 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사회복지법 36조 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 · 군 ·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자격 요건 중 같은 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속함
-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 조성비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으로 운영

## 4.6 제공 서비스

### 1) 서비스 제공 기준

**필수 서비스**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작업치료적, 언어치료적 훈련) 등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

3.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 6개월에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 불가
-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
- 주 · 야간보호시설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 불가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주 3회 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

### 2) 상세 서비스

#### ● 보건·의료 서비스

- 목적: 노인성 질병에 대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한 사전 예방 관리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를 목적

• 세부 프로그램

| 구분 | 세부내용 |
|---|---|
| 건강체크 | 정기적인 건강체크 및 상담실시 |
| 투약관리 |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강관리 |
| 병원동행 | 의료기관을 연계한 체계적인 병원동행 |
| 보건 교육 | 건강한 생활유지와 노인성 질환 완화를 위한 교육 |

## ●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재활서비스)

• 목적: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신체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능력 및 잔존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

• 세부 프로그램

| 구분 | 세부내용 |
|---|---|
| 스트레칭 | 근육,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 동작 훈련 |
| 작업활동 |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동작 훈련 |
| 안마서비스 | 근력 향상과 피로회복을 위한 안마서비스 |
| 온열치료 | 신체 기능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
| 일상생활훈련 |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동작 훈련 |

## ● 인지기능 프로그램 (심리.사회증진 서비스)

• 목적: 다양한 인지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손과 눈의 협응력을 증대시키고, 어르신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잔존기능을 유지 향상

• 세부 프로그램

| 구분 | 세부내용 |
|---|---|
| 종이접기 | 소근육과 두뇌 활동을 유도한 조형 활동 |
| 민요교실 | 전통 음악과 악기를 활용한 음악 요법 |
| 웃음치료 | 맷돌의 기본원리와 레크리에이션을 병행한 웃음치료 |
| 동화구연 |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회상 활동 |
| 미술활동 | 자유 연상, 자기표현 활동을 통한 미술 요법 |
| 노래교실 | 노래활동을 통해 우울감 해소 및 기억력 향상 |

## ● 사회적응 프로그램(정서지원 서비스)

• 목적 : 신체, 정서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지지망을 형성하여 사회 적응력을 향상

• 세부 프로그램

| 구분 | 세부내용 |
|---|---|
| 생신잔치 | 자존감 향상을 위한 분기별 생신잔치 |
| 명절행사 | 명절의 의미를 부여한 체험 활동 |
| 나들이 | 계절의 변화 인지와 일상생활의 활력 제공 |
| 영화상영 |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회상활동 |
| 어버이날 | 효 문화 계승과 자존감 향상 |
| 세상둘러보기 | 언론을 매개체로한 회상활동으로 사회 적응력 향상 |

## ● 위생관리 서비스

• 목적 :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반복된 위생 관리 훈련으로 사회 적응력을 향상

• 세부 프로그램

| 구분 | 세부내용 |
|---|---|
| 목욕서비스 | 이용자의 위생, 청결을 위한 정기적 서비스 |
| 배변 훈련 | 반복된 배변 훈련과 교육을 통한 건강 관리 |
| 손톱관리 | 청결한 신체 유지 |
| 이·미용서비스 | 이용자의 욕구와 청결 관리를 통해 사회 적응력 향상 |

## ● 부양자 지원 사업

• 목적 : 부양가족과의 지지망 형성으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기관과의 신뢰성을 강화

• 세부 프로그램

| 구분 | 세부내용 |
|---|---|
| 입소상담 | 서비스 이용 욕구자의 적격성 판단 및 욕구 파악 |
| 이용자 상담 |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 상담 |
| 사례회의 | 이용자의 사례회의를 통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 보호자 간담회 | 부양가족과의 정보교류 및 정서적 지지망 형성 |

## 4.7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표 4-8
2021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전국, 광역)

| 시·도 | 65세이상노인인구 (2020.12.31 주민등록인구기준) | 방문요양서비스 | | | 주·야간보호서비스 | | |
|---|---|---|---|---|---|---|---|
| | | 시설수 | 이용인원 | 종사자수 | 시설수 | 이용인원 | 종사자수 |
| 합계 | 8,496,077 | 2,656 | 49,645 | 41,550 | 2,321 | 47,665 | 23,108 |
| 서울 | 1,561,139 | 354 | 5,899 | 5,779 | 433 | 8,887 | 4,947 |
| 부산 | 657,711 | 125 | 2,506 | 2,112 | 102 | 1,981 | 869 |
| 대구 | 400,494 | 98 | 1,381 | 1,315 | 67 | 1,256 | 550 |
| 인천 | 411,483 | 169 | 2,436 | 2,386 | 104 | 2,162 | 1,014 |
| 광주 | 205,666 | 143 | 3,048 | 2,682 | 95 | 2,119 | 1,327 |
| 대전 | 210,784 | 95 | 1,272 | 1,448 | 85 | 1,852 | 835 |
| 울산 | 143,367 | 38 | 917 | 710 | 36 | 682 | 293 |
| 세종 | 34,881 | 8 | 122 | 230 | 10 | 296 | 132 |
| 경기 | 1,775,315 | 575 | 9,436 | 9,325 | 510 | 10,361 | 4,956 |
| 강원 | 319,691 | 137 | 4,748 | 3,101 | 106 | 2,286 | 1,003 |
| 충북 | 288,148 | 72 | 740 | 474 | 87 | 1,779 | 992 |
| 충남 | 405,188 | 124 | 2,290 | 1,870 | 107 | 2,149 | 929 |
| 전북 | 386,203 | 140 | 2,855 | 1,816 | 161 | 3,609 | 1,518 |
| 전남 | 435,880 | 207 | 5,559 | 3,156 | 125 | 2,533 | 1,152 |
| 경북 | 573,715 | 148 | 2,564 | 2,230 | 137 | 2,366 | 1,192 |
| 경남 | 580,258 | 205 | 3,337 | 2,595 | 136 | 2,961 | 1,237 |
| 제주 | 106,154 | 18 | 535 | 321 | 20 | 386 | 162 |

〈출처〉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괄표(시.군.구).xlsx e-나라지표 복지이용시설 현황

표 4-9
2021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충청남도)

| 시·도 | 65세이상노인인구 (2020.12.31 주민등록인구기준) | 방문요양서비스 | | | 주·야간보호서비스 | | |
|---|---|---|---|---|---|---|---|
| | | 시설수 | 이용인원 | 종사자수 | 시설수 | 이용인원 | 종사자수 |
| 충남 합계 | 405,188 | 124 | 2,290 | 1,870 | 107 | 2,149 | 929 |
| 천안시 | 72,151 | 34 | 434 | 426 | 28 | 457 | 204 |
| 공주시 | 27,675 | 4 | 108 | 90 | 7 | 240 | 91 |
| 보령시 | 26,211 | 6 | 207 | 236 | 2 | 13 | 11 |
| 아산시 | 42,355 | 12 | 143 | 60 | 17 | 307 | 124 |
| 서산시 | 32,436 | 12 | 265 | 236 | 7 | 181 | 100 |
| 논산시 | 31,095 | 6 | 37 | 76 | 8 | 71 | 40 |
| 당진시 | 31,331 | 6 | 123 | 91 | 4 | 59 | 41 |
| 금산군 | 16,075 | 7 | 110 | 52 | 7 | 186 | 77 |
| 부여군 | 22,683 | 8 | 130 | 90 | 6 | 109 | 52 |
| 서천군 | 18,988 | 8 | 214 | 138 | 6 | 148 | 63 |
| 청양군 | 11,059 | 2 | 48 | 26 | 4 | 146 | 38 |
| 홍성군 | 24,005 | 5 | 252 | 166 | 7 | 152 | 53 |
| 예산군 | 24,627 | 11 | 161 | 120 | 3 | 46 | 22 |
| 태안군 | 19,356 | 2 | 57 | 52 | 1 | 34 | 13 |

〈출처〉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괄표(시.군.구).xlsx e-나라지표 복지이용시설 현황

- 재가시설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함
  - 대구의 경우 비슷한 인구수의 인천보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수 및 이용자수가 절반에 불과
  - 반면 노인 인구수가 절반에 가까운 광주가 대구보다 시설 수는 40% 정도, 이용자 수는 80%정도 많음
- 동일한 광역권 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충청남도 내 비슷한 인구수의 서천군과 태안군을 비교했을 때, 방문요양시설은 각각 8개소와 2개소, 주야간보호시설은 각각 6개소와 1개소로 큰 차이를 보임
-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수요(욕구)가 다르다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시설에 지급되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시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낮은 수가로 인해 새롭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음
- 지역사회 거점시설을 통한 부족한 지역 내 돌봄서비스 확장이 필요함

# 5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로드맵

## 5.1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로드맵

| 단계 | 단계별 내용 | | 핵심주체 | 핵심주체 역할 |
|---|---|---|---|---|
| 거점시설 계획단계 | 지역조사 | 수요조사, 물적-인적 조사 | 지자체<br>지원센터 — 지역주민 | 지자체 주도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
| | 비즈니스 모델 구상 | 사업의 정의 환경분석, 수익성 분석 | | |
| | 공간기획 및 설계 |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공간 설계 | | |
| 거점시설 조성단계 | 비즈니스 모델 확정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돌봄서비스 사업 설명회 | 지원센터<br>지자체 — 지역주민 | 사업 계획과 실행 준비를 위해 외부 자원의 연결, 교육프로세스 기획 및 집행을 주도 |
| | 비즈니스 로드맵 구축 | 영역별 로드맵 구축 | | |
| | 역량강화 | 조합원 역량강화, 인큐베이팅 실무인력 확보 | | |
| 거점시설 운영단계 | 주야간 보호센터 | 시설인가 | 마을조합 — 네트워크<br>지자체 — 지원센터 | 실행 주체로써 관련 법률과 조합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강화 |
| | | 홍보 및 마케팅 | | |
| | | 정보 공개 및 서비스 평가 | | |
| | 사업 확장 | 노인돌봄사업 정책 연계 | | |

- 각 단계별 핵심주체를 중심으로 면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과제들을 단계별 추진 계획 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함
- 거점시설 계획단계부터 거점시설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련의 계획 속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 거점시설 설계 시공과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준비과정이 서로간의 일정 조정과 공유를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5.2 지역 조사

지역조사는 서비스수요자원조사와 서비스공급자원조사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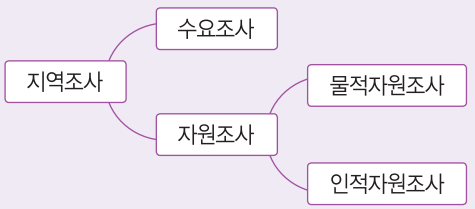


### 1) 지역조사

#### ● 지역조사의 필요성

- 지역의 돌봄서비스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의 지역사회 돌봄수요와 공급과 같은 지역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누가,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의 수요와 공급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 지역조사의 목적

-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자 현황과 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함

#### ● 사업 실행을 위한 TF팀 구성

TF팀의 역할

- 행정·현장센터 : 수요조사, 물적자원조사, 주민협의체·실행주체 구성
- 주민협의체·실행주체 : 지역내 인적자원조사

⇒ 지역조사 단계부터 긴밀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 TF팀은 주민협의체, 실행주체, 현장센터, 관련부서 행정 담당자로 구성함
- TF팀이 주축이 되어 거점시설에서의 돌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나 워크숍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과 방향을 도출함
-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이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된 경우라면 별도의 TF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지역조사의 방법

• 각종 데이터 조사

- 국가통계포탈(Kosis.kr), 공공데이터포탈(data.go.kr), e-나라지표 등
- 노인 인구조사, 노인 성별 인구조사, 노인 독거 가구(독거노인중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장기요양등급자 조사 등

•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 대상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실행함
- 서비스 당사자를 통한 조사와 서비스 당사자 가족을 통한 조사를 구분하여 분석함

## ● 지역조사 결과물의 활용

•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지역에 충분한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는지
-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
-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할 인력 충원은 가능한지
-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은 있는지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거점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반영함

-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설계
  · 이용자 숫자에 따라 공간의 크기 등과 같은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로 공간을 설계할지 결정함
  · 대상자의 연령층, 등급정도, 서비스 요구 내용에 따라 공간 설계를 반영함
- 거점시설 내 연계사업에 따른 공간 설계
  · 예시) 공유주방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에 급·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주방의 시설 기준과 주·야간보호시설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함

### 2) 지역 돌봄 수요조사

#### ● 일반조사

- 나이, 성별, 배우자유무, 지역내 거주기간
- 가구형태별(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가구원 수
- 학력, 취업상태별
- 수급대상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 ● 일상생활 기본조사

- 기상시간, 수면시간, 외부 활동시간
- 식사시간, 식사횟수, 식사지원 서비스 유무 및 방식

#### ●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면

표 5-2
일상생활 수행능력

| 항목 | 상세 | 스스로 가능 | 부분적 도움 | 전적으로 의존 |
|---|---|---|---|---|
| 옷입기 |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 옷걸이에서 꺼내 챙겨 입고 단추나 지퍼, 벨트를 채우는 것 | | | |
| 세수하기 |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를 하는 것 | | | |
| 목욕 |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물수건으로 때 밀기, 샤워(물 뿌리기) 등을 모두 포함 | | | |
| 식사하기 |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능력 | | | |
| 이동 | 잠자리(침상)에서 벗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 | | | |
| 화장실 사용 |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과 대소변을 본 후에 닦고 옷을 추려 입는 것 | | | |
| 대소변 조절 | 대변이나 소변보기를 참거나 조절하는 능력 | | | |

〈출처〉 https://tongblog.sdm.go.kr /attachment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능력

표 5-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 항목 | 상세 | 스스로 가능 | 부분적 도움 | 전적으로 의존 |
|---|---|---|---|---|
| 몸 단장 | 빗질, 화장, 면도, 손/발톱 깎기 포함 | | | |
| 집안 일 |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하기 | | | |
| 식사준비 |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 | | | |
| 빨래하기 | 손으로 직접 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세탁한 후 널어 말리는 것 포함 | | | |
| 근거리 외출 |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상점, 관공서, 병원, 이웃 등을 다녀오는 것 | | | |
| 교통수단 이용 | 버스, 전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몰고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 | | | |
| 물건사기 | 상점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사고 또 돈을 지불하는 능력 | | | |
| 금전사용 |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를 하는 것 | | | |
| 전화사용 | 전화번호를 찾고, 걸고 또 받는 것 | | | |
| 약 챙겨먹기 | 제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먹기 | | | |

〈출처〉 https://tongblog.sdm.go.kr /attachment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
- 의료기관 이용 형태
  (병원 이용 횟수 및 주로 이용하는 병원. 이동 방법,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
- 정기 건강검진
- 만성질병 유무 및 개수(과거, 현재)
-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복용 횟수, 약 복용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
- 구강 건강, 낙상, 치매

## 건강 행태

- 음주 여부(음주 횟수, 음주량)
- 흡연 여부
- 운동 횟수, 시간, 방법 및 만족도 (최근 일주일 동안 30분이상 걸었던 날)
-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유무 및 선호하는 프로그램

● **주거**

- 거주형태(자가소유, 전세, 월세)
- 주거지 생활 편리성
- 난방, 우풍, 건물 노후도, 안전장치
- 현 주거지 불편 사항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실태(일의 유무, 일의 개수, 일의 종류, 근무 시간)
-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 지출항목(식비, 월세,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 소득의 방식(근로소득, 공적급여, 용돈)
- 경제활동 의사 유무
- 일을 하는 이유
-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사회활동**

- 가족 및 친구 유무(생존자녀, 생존손자녀, 형재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및 이웃)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주변 관계(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면 지인의 숫자와 만남 정도)
- 사회단체 활동 참여율(참여 단체, 활동시간)
- 경로당 이용 실태
- 지역에 필요한 여가 시간 활용 시설
- 여가 활동 종류 및 여가 시간
- TV시청 시간
- 여행, 영화(공연) 회수와 동행자 실태

● **사회서비스**

- 복지관 이용 실태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참여 시간
-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사
- 돌봄 서비스 이용유무 및 서비스 종류와 이용 횟수
- 돌봄 서비스 만족도
- 현재 이용 돌봄서비스의 불편한 점
- 필요한 돌봄 서비스
- 필요한 여가 프로그램

### 3) 지역사회 물적 자원조사

● **지역사회 물적 자원 구분**

- 의료기관 : 보건소, 의원 및 병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종합병원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신체 활동 시설 : 야외공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 **지역사회 물적 자원 현황 분석**

표 5-4
지역사회자원
현황 분석

| 항목 | | 분석내용 |
|---|---|---|
| 이용률 | | 각 지역사회자원별 이용한다고 응답한 노인 비율 |
| 이용 목적 | 의료기관 | 1) 건강상담 2) 예방접종 3) 건강검진 4) 건강증진 활동<br>5) 만성질환 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물리치료 및 재활<br>8) 보건의료정보 습득 9) 질병 치료 |
| | 구청 및 동주민센터 | 1) 운동 2) 휴식 3) 약속장소 4) 구청, 동주민센터 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
| | 신체활동시설 (체육시설포함) | 1) 운동 2) 휴식 3) 약속장소 4) 공원 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
| 이동수단 | | 1) 도보 2) 자전거 3) 대중교통 4) 택시 5) 자가운전<br>6) 기타 |
| 이동시간 | | 1) 10분 미만 2) 10~19분 3) 20~29분 4) 30~50분<br>5) 1시간 이상 |
| 이동반경 | | (연령별) 이동수단*이동시간 |
| 만족도 | | 지역사회 자원별 만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비율 |
| 질병 및 건강상담 가능여부 | |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질병 및 건강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비율 |

〈출처〉 도시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2021 p27

### 4) 지역사회 인적 자원조사

● **지역내 사업 수행 주체 조사**

- 지역 주민들 중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는지 조사
- 실제 유사한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지역 주민 조사

표 5-5
돌봄 인력 조사표

| 구분 | 인원(명) | 주·야간보호서비스 돌몸사업경험자(명) | | 주·야간보호서비스 외 돌봄사업경험자(명) | | 현재 근무 여부 | |
|---|---|---|---|---|---|---|---|
| | | 1년미만 | 1년이상 | 1년미만 | 1년이상 | 군무중 | 휴직중 |
| 사회복지사 | | | | | | | |
| 요양보호사 | | | | | | | |
| 간호사 | | | | | | | |
| 간호조무사 | | | | | | | |
| 물리치료사 | | | | | | | |

## 5.3 비즈니스 모델 구상

### 1) 비즈니스 모델 구상 개요

#### ● 필요성

-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및 홍보 방법 모색함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사업의 확장 방향을 찾기 위한 초석으로 활용

#### ● 목적

- 지속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거점시설의 설계에 반영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2) 사업 분석

#### ●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는 사업의 주된 목표와 방향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프로세스와 실현가능성을 이해관계자(주민협의체, 실행주체, 행정, 현장센터)와 공유하는 과정임

• 사업의 목적(가치제언)
-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 혹은 그 가족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 상품과 서비스
- 우리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고객 분석
-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대상자 가족을 나누어 분류

• 수익모델
- 이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수입 요소 확인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 기타 판매수익)

• 사업의 효과
- 사업을 통해 발생될 매출,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

## 환경분석

- 환경분석은 내부환경·외부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
-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C분석툴과 다양한 전략 수립에 장점을 가진 SWOT분석툴, 그 이외에도 현장에 맞는 환경 분석 방식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함

• 3C환경분석

표 5-6
노인돌봄서비스
3C환경 분석

| | | |
|---|---|---|
| **Company (나&우리)** | 나&우리 장점 | 이 사업을 우리가 더 잘 할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
| | 나&우리 단점 | 이 사업이 우리에게 어려운 우리의 단점은? |
| | 활용자원 | 이 사업에 활용할 만한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은? |
| **Customer (고객)** | 목표고객 | 주 타켓 대상은 누구인가?<br>노인서비스로 한정할 때 대상자 노인 본인과 노인 가족중 누구를 주된 타켓층으로 할 것인가? |
| | 소비자니즈 | 목표 고객의 주된 욕구는 무엇인가? |
| | 가치제언 |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
| **Competitor (시장)** | 경쟁자 선정 | 우리 사업의 가장 큰 경쟁자를 하나 선정하고 어떤 이유로 선정했는지 확인 |
| | 경쟁자의 장점 | 선정된 경쟁자의 장점은? |
| | 경쟁자의 단점 | 선정된 경쟁자의 단점은? |

• SWOT 분석

| 구분 | 기회(Opportunity) | 위험(Threat) |
|---|---|---|
| 강점<br>(Strength) | • SO전략<br>강점은 가지고<br>기회는 살리는 전략 | • ST전략<br>강점은 가지고<br>위험은 최소화하는 전략 |
| 약점<br>(Weakness) | • WO전략<br>약점은 보완하고<br>기회는 살리는 전략 | • WT전략<br>약점은 보완하고<br>위협은 최소화하는 전략 |

## ● 비즈니스 프레임

- 비즈니스 프레임은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각 요소들이 어떠한 유기적 연결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지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기본 모델

-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비즈니스 플랜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겐캔버스나 젠캔버스 모델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장의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기본적인 사업 모델 플랜을 먼저 진행하면서 이해를 높이고 심화과정으로 린캔퍼스나 젠캔퍼스를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Value<br>(가치제언) | ➡ | Supply<br>(상품) | ➡ | Revenue<br>(수익) | ➡ | Infrastructure<br>(토대) |
|---|---|---|---|---|---|---|
| 지역주민들이<br>마을안에서<br>안심하고<br>이용할수 있는<br>돌봄서비스 제공 | | 노인주간보호<br>서비스<br>⇒ 방문요양등<br>으로 확대 | | 노인장기요<br>양보험 수가<br>(80~85%)<br>자부담<br>(10~15%) | | (시스템,협력업체 등)<br>사업 실행공간<br>마을내 근로자<br>행정, 보건소,<br>병원 등 네트워크 |

- 기본 모델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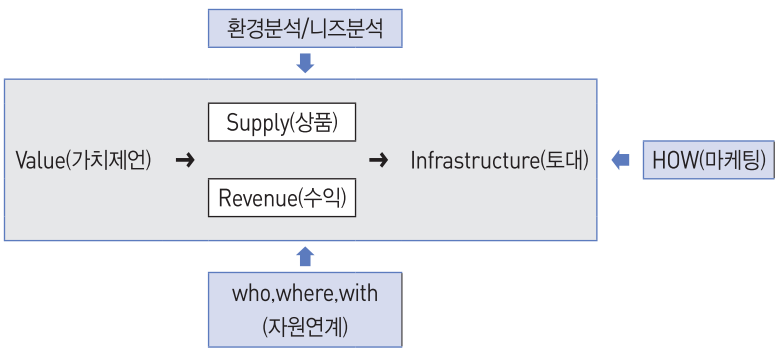

• 린 캔버스

- 린(Lean)이란 동과 시간사용을 최적화하여 낭비를 없애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목적: 시장을 빠르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출함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유형중 초기 창업에 효율적이라고 평가됨
- 문제와 가치제안은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솔루션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품의 핵심기능으로 기업의 관점에서 기술함

<table>
<tr><td rowspan="2">① 문제<br>⇒ 고객의 핵심 문제와 기존 대안을 기술</td><td>④ 솔루션<br>⇒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기능 3가지</td><td rowspan="2">③ 고유의 가치제안<br>⇒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타 상품대비 차별점을 정리한 단일 메시지</td><td>⑤ 경쟁우위</td><td rowspan="2">② 고객군<br>⇒ 고객군 구체화</td></tr>
<tr><td>⑧ 핵심지표<br>⇒ 측정해야 하는 핵심지표</td><td>⑨ 채널<br>⇒ 고객 도달 경로</td></tr>
<tr><td colspan="2">⑦ 비용구조<br>⇒ 고객획득비용, 유통비용, 호스팅, 인건비 등</td><td colspan="3">⑥ 수익원<br>⇒ 매출모델, 생애가치, 매출</td></tr>
</table>

### 3) 수익성 분석

#### (1)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 **본인부담금**

표 5-7 장기요양보험 본임부담금

| | 정부지원 | 자부담 |
|---|---|---|
| 일반 대상자 | 85% | 15% |
| 의료급여수급자 | 94% | 6%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면제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의료급여법 제 3조~

• 월 한도액 기준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

표 5-8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기준
본임부담금

| 등 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월 한도액(원) |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 본인 부담금 (최대) | 일반 대상자 | 228,105 | 202,755 | 194,310 | 178,470 | 153,195 |
| | 의료급여수급자 | 91,242 | 81,102 | 77,724 | 71,388 | 61,278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 |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참조

• 1일당 본인부담금

- 비급여 대상은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이용자가 부담함
- 야간·토요일·일요일 이용시 급여비용 증가함

표 5-9
장기요양보험
1일당 본임부담금

| 분류 | | 금액(원) | 일반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480 | 5,322 | 2,128 | - |
| | 장기요양 2등급 | 32,850 | 4,928 | 1,971 | - |
| | 장기요양 3등급 | 30,330 | 4,550 | 1,819 | - |
| | 장기요양 4등급 | 28,940 | 4,341 | 1,736 | - |
| | 장기요양 5등급 | 27,560 | 4,134 | 1,653 | - |
| | 인지지원등급 | 27,560 | 4,134 | 1,653 | -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7,570 | 7,136 | 2,854 | - |
| | 장기요양 2등급 | 44,060 | 6,609 | 2,643 | - |
| | 장기요양 3등급 | 40,670 | 6,101 | 2,440 | - |
| | 장기요양 4등급 | 39,290 | 5,894 | 2,357 | - |
| | 장기요양 5등급 | 37,890 | 5,684 | 2,273 | - |
| | 인지지원등급 | 37,890 | 5,684 | 2,273 | -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9,160 | 8,874 | 3,549 | - |
| | 장기요양 2등급 | 54,810 | 8,222 | 3,288 | - |
| | 장기요양 3등급 | 50,600 | 7,590 | 3,036 | - |
| | 장기요양 4등급 | 49,220 | 7,383 | 2,953 | - |
| | 장기요양 5등급 | 47,820 | 7,173 | 2,869 | - |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2,869 | - |

| | | | | | |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5,180 | 9,777 | 3,910 | - |
| | 장기요양 2등급 | 60,380 | 9,057 | 3,622 | - |
| | 장기요양 3등급 | 55,780 | 8,367 | 3,346 | - |
| | 장기요양 4등급 | 54,370 | 8,156 | 3,262 | - |
| | 장기요양 5등급 | 52,990 | 7,979 | 3,179 | - |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2,869 | - |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9,890 | 10,484 | 4,193 | - |
| | 장기요양 2등급 | 64,750 | 9,713 | 3,885 | - |
| | 장기요양 3등급 | 59,810 | 8,972 | 3,588 | - |
| | 장기요양 4등급 | 58,430 | 8,765 | 3,505 | - |
| | 장기요양 5등급 | 57,040 | 8,556 | 3,422 | - |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2,869 | -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참조

• 본인부담 비급여

- 식비, 간식비, 약제비 등은 비급여 대상으로 이용자가 부담함
- 운영 기관마다 기준이 다름
  · 예를 들어 식사 2,500원과 간식 1,00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 하루에 식사 2번, 간식 1번 이용 시 하루 6,000원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

| 월 이용비용 = 본인부담금 + 비급여비용 |
|---|

표 5-10
재가서비스 이용자
월평균
본인부담금

| | 없음(%) | 5만원이하 (%) | 5~10만원 이하(%) | 10~20만원 이하(%) | 20만원이상 (%) | 월평균금액 (만원) |
|---|---|---|---|---|---|---|
| 주·야간 보호 | 1.0 | 0.9 | 4.8 | 30.0 | 54.3 | 19.5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 (2) 주간보호서비스 수익률 분석

#### ● 이용료 수입

• 2021년 기준 월 한도액

표 5-11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
| 월 한도액(원)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3조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이동서비스비용

-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지자체에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 거주지에서 장기요양시설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정함

| 분류번호 | 거리 | 금액(원) |
|---|---|---|
| 러-1 | 5km미만 | 830 |
| 러-2 | 5km이상~10km미만 | 2,630 |
| 러-3 | 10km이상~20km미만 | 5,230 |
| 러-4 | 20km이상 | 8,630 |

표 5-12 주·야간보호서비스 이동서비스 비용

〈출처〉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4조

- 이동서비스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시설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산정함
- 이동서비스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함
- 장기요양시설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이동서비스비용 신청 · 중단절차 및 일지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목욕서비스 가산금

- 주·야간보호시설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함
- 주·야간보호시설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시설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시설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제공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1등급과 2등급은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주·야간보호서비스보다 요양시설쪽의 선호도가 높음. 3등급도 현실적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보다는 요양시설을 선호함
- 인지지원등급은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료 한도가 낮아 이를 대상으로 주·야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이 어려움
-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주로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함

표 5-13
20% 추가 산정시 월 한도액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월 한도액(원)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 20% 추가 산정시 | 1,824,840 | 1,622,040 | 1,554,480 | 1,427,760 | 1,225,560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

• 이용료 수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임
- 많은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전체를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사용하려하지 않고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고자 하는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과 시설 유지 관리에 중요한 부분임

이용자 1인의 월 이용료 수입(4등급 기준)
1,010,650원(85%/그외 15%는 다른 서비스 이용) 〈 1,189,800원 (100%) 〈 1,427,760원 (120%)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이용일자별 이용료 비교
- 아래 하늘색으로 표기된 블록이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임

| 시간 | 등급 | 금액(원) | 22일 | 24일 | 25일 | 26일 | 28일 |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480 | 780,560 | 851,520 | 887,000 | 922,480 | 993,440 |
| | 장기요양 2등급 | 32,850 | 722,700 | 788,400 | 821,250 | 854,100 | 919,800 |
| | 장기요양 3등급 | 30,330 | 667,260 | 727,920 | 758,250 | 788,580 | 849,240 |
| | 장기요양 4등급 | 28,940 | 636,680 | 694,560 | 723,500 | 752,440 | 810,320 |
| | 장기요양 5등급 | 27,560 | 606,320 | 661,440 | 689,000 | 716,560 | 771,680 |
| | 인지지원등급 | 27,560 | 606,320 | 661,440 | - | - | -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7,570 | 1,046,540 | 1,141,680 | 1,189,250 | 1,236,820 | 1,331,960 |
| | 장기요양 2등급 | 44,060 | 969,320 | 1,057,440 | 1,101,500 | 1,145,560 | 1,233,680 |
| | 장기요양 3등급 | 40,670 | 894,740 | 976,080 | 1,016,750 | 1,057,420 | 1,138,760 |
| | 장기요양 4등급 | 39,290 | 864,380 | 942,960 | 982,250 | 1,021,540 | 1,100,120 |
| | 장기요양 5등급 | 37,890 | 833,580 | 909,360 | 947,250 | 985,140 | 1,060,920 |
| | 인지지원등급 | 37,890 | - | - | - | - | - |

| | | | | | | | |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9,160 | 1,301,520 | 1,479,000 | 1,479,000 | 1,538,160 | 1,656,48 |
| | 장기요양 2등급 | 54,810 | 1,205,820 | 1,315,440 | 1,370,250 | 1,425,060 | 1,534,680 |
| | 장기요양 3등급 | 50,600 | 1,113,200 | 1,214,400 | 1,265,000 | 1,315,600 | 1,416,800 |
| | 장기요양 4등급 | 49,220 | 1,082,840 | 1,181,280 | 1,230,500 | 1,279,720 | 1,378,160 |
| | 장기요양 5등급 | 47,820 | 1,052,040 | 1,147,680 | 1,195,500 | - | - |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 | - | - | - | -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5,180 | 1,433,960 | 1,564,320 | 1,629,500 | 1,694,680 | 1,825,040 |
| | 장기요양 2등급 | 60,380 | 1,328,360 | 1,449,120 | 1,509,500 | 1,569,880 | 1,690,640 |
| | 장기요양 3등급 | 55,780 | 1,227,160 | 1,338,720 | 1,394,500 | 1,450,280 | - |
| | 장기요양 4등급 | 54,370 | 1,196,140 | 1,304,880 | 1,359,250 | 1,423,620 | - |
| | 장기요양 5등급 | 52,990 | 1,165,780 | - | - | - | - |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 | - | - | - | - |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9,890 | 1,537,580 | 1,677,360 | 1,747,250 | 1,817,140 | - |
| | 장기요양 2등급 | 64,750 | 1,424,500 | 1,554,000 | 1,618,750 | - | - |
| | 장기요양 3등급 | 59,810 | 1,315,820 | 1,435,440 | 1,495,250 | - | - |
| | 장기요양 4등급 | 58,430 | 1,285,460 | 1,402,320 | - | - | - |
| | 장기요양 5등급 | 57,040 | - | - | - | - | - |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 | - | - | - | - |

표 5-14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이용일자별 이용료 비교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1조 참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의 20%를 가산함
  - 공휴일(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의 30%를 가산함

〈예시〉 4등급 이용자가 하루 8시간(09시~17시) 24일 이용했을 때,
- 18시 이전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 시, 서비스비용은 1,181,280원
- 24일 중 공휴일 이용이 4일인 경우, 서비스비용은 1,240,340원(984,400원+255,940원)

- 직원 추가 배치 가산금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해당 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치매전담실 인원 제외)
- 가산점수의 합은 추가배치된 종사자의 직종별 점수 합계

요양보호사는 1인당 6.4명 미만 / 간호(조무)사는 1인당 19명 미만

·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 서비스 유형점수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1.5점

표 5-15
직원추가 가산금

| 구 분 | 입소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
|---|---|---|
| 주·야간 보호기관 | 5명 미만 | 1.4점 이하 |
| | 5명 이상 10명 미만 | 2.6점 이하 |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4.0점 이하 |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6.4점 이하 |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8.8점 이하 |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10.0점 이하 |
| | 80명 이상 90명 미만 | 11.2점 이하 |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13.6점 이하 |
| | 120명 이상 | 14.8점 이하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56조

- 직원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과는 별도로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0.6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이는 가산점수 인정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예시〉
- 정원이 22명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실제 월별 입소자 수가 17.5명이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1인, 물리치료사 1인,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근무 시,
  · 17.5÷3(근무중인 요양보호사)=5.83로 6.4보다 작으므로,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는 1.2점
  · 17.5명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가산점수가 1.2점
  · 합계는 1.2+1.2=2.4점
- 월 가산 기준금액이 1600만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 16,000,000원 * 2.4(가산점수) ÷ 17.5(입소자수) * 1.5(서비스 유형점수) = 3,291,428원
  - 만일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인 경우 0.6점이 추가되어 4,114,285원

가산금액을 많이 받는 팁

◆ 동일 조건하에서

월 가산기준금액이 높을수록
가산점수가 높을수록
입소자수가 적을수록
→ 가산금액이 증가

- 월 가산금액은 같은 서비스 제공 일수라도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을 때 늘어남
- 입소자수는 하루 중 가장 입소자가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정함
  · 오전-오후, 혹은 낮과 저녁등으로 입소자가 나뉘어지면 기준이 달라짐
  · 일별 이용자수와 일별 입소자수는 개념이 다름

-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 프로그램 비용은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금으로 외부 교육업체에 지불함 (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과는 별도로 맞춤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비용이 지급됨)

⇒ 주 ·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 수준 유지 · 개선 등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

⇒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강사가 제공함

⇒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함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함

⇒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한 경우 0.4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0.2점

## ● 수익 계산

- 2021년 최저 인건비 1,822,480원 기준임
- 서비스 이용료 수입과 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수익률을 단순화하여 비교함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경우 임대료가 면제라고 할 때 나머지 기타 비용은 비급여로 충당이 되고 기타 감가 비용과 공과금 가산금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 예시)

| 구분 | 직책 | 이용자수(정원) | | | | | | | | | |
|---|---|---|---|---|---|---|---|---|---|---|---|
| | | 7명 | | 10명 | | 15명 | | 17명 | | 20명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장기요양요원 | 사회복지사 | 0 | 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간호조무사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요양보호사 | 1 | 1,822,480 | 1 | 1,822,480 | 2 | 3,644,960 | 2 | 3,644,960 | 3 | 5,467,440 |
| | 4대보험 | | 360,122 | | 540,183 | | 720,244 | | 720,244 | | 900,305 |
| | 퇴직적립금 | | 302,532 | | 453,798 | | 605,063 | | 605,063 | | 756,329 |
| | 소계 | | 4,307,614 | | 6,461,421 | | 8,615,227 | | 8,615,227 | | 10,769,034 |
| | 비율 | | 64.34% | | 67.55% | | 60.05% | | 52.98% | | 56.29% |
| 인건비 | 시설장 | 1 | 1,822,480 | 1 | 1,822,480 | | 1,822,480 | | 1,822,480 | | 1,822,480 |
| | 조리원 | 1 | 1,822,480 | 1 | 1,822,480 | | 1,822,480 | | 1,822,480 | | 1,822,480 |
| | 보조원 | 1 | 1,822,480 | 1 | 1,822,480 | | 1,822,480 | | 1,822,480 | | 1,822,480 |
| | 사무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4대보험 | | 540,183 | | 540,183 | | 540,183 | | 540,183 | | 540,183 |
| | 퇴직적립금 | | 453,798 | | 453,798 | | 453,798 | | 453,798 | | 453,798 |
| | 소계 | | 6,461,421 | | 6,461,421 | | 6,461,421 | | 6,461,421 | | 6,461,421 |
| | 총인건비 | | 10,769,035 | | 12,922,842 | | 15,076,648 | | 15,076,648 | | 17,230,455 |
| 수입 | | | 6,694,800 | | 9,564,000 | 0 | 14,346,000 | | 16,258,800 | | 19,128,000 |
| 수익 | | | -4,074,235 | 0 | -3,358,842 | 0 | -730,648 | | 1,182,152 | | 1,897,545 |

| 구분 | 직책 | 이용자수(정원) | | | | | | | | | |
|---|---|---|---|---|---|---|---|---|---|---|---|
| | | 24명 | | 28명 | | 33명 | | 38명 | | 45명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장기요양요원 | 사회복지사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간호조무사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요양보호사 | 3 | 5,467,440 | 4 | 7,289,920 | 5 | 9,112,400 | 5 | 9,112,400 | 6 | 10,934,880 |
| | 4대보험 | | 900,305 | | 1,080,366 | | 1,260,427 | | 1,260,427 | | 1,440,488 |
| | 퇴직적립금 | | 756,329 | | 907,595 | | 1,025,861 | | 1,025,861 | | 1,210,126 |
| | 소계 | | 10,769,034 | | 12,922,841 | | 15,043,648 | | 15,043,648 | | 17,230,454 |
| | 비율 | | 46.91% | | 48.25% | | 47.66% | | 41.39% | | 40.03% |
| 인건비 | 시설장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조리원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보조원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사무원 | 0 | 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4대보험 | | 540,183 | | 720,244 | | 720,244 | | 720,244 | | 720,244 |
| | 퇴직적립금 | | 453,798 | | 605,063 | | 605,063 | | 605,063 | | 605,063 |
| | 소계 | | 6,461,421 | | 8,615,227 | | 8,615,227 | | 8,615,227 | | 8,615,227 |
| | 총인건비 | | 17,230,455 | | 21,538,68 | | 23,658,875 | | 23,658,875 | | 25,845,681 |
| 수입 | | | 22,953,600 | | 26,779,200 | 0 | 31,561,200 | | 36,343,200 | | 43,038,000 |
| 수익 | | | 5,723,145 | 0 | 5,241,132 | 0 | 7,902,325 | | 12,684,325 | | 17,192,319 |

표 5-16 주야간보호서비스 수익률 분석

- 다만, 위와 같이 지출 시, 24명부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 비율 48.3%를 맞추지 못함(표 4-5 참조)
- 따라서 아래 새로운 표와 같이 일부 인건비를 조정하여 이 비율을 맞추어야 함

| 구분 | 직책 | 이용자수(정원) | | | | | | | | | |
|---|---|---|---|---|---|---|---|---|---|---|---|
| | | 24명 | | 28명 | | 33명 | | 38명 | | 45명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장기요양요원 | 사회복지사 | 0 | 2,000,000 | 1 | 2,000,000 | 1 | 2,000,000 | 1 | 2,000,000 | 1 | 2,200,000 |
| | 간호조무사 | 1 | 2,000,000 | 1 | 2,000,000 | 1 | 2,000,000 | 1 | 4,000,000 | 1 | 4,400,000 |
| | 요양보호사 | 3 | 5,467,440 | 4 | 7,289,920 | 5 | 9,112,400 | 5 | 10,000,000 | 6 | 12,000,000 |
| | 4대보험 | | 900,305 | | 1,080,366 | | 1,260,427 | | 1,580,800 | | 1,440,488 |
| | 퇴직적립금 | | 756,329 | | 907,595 | | 1,025,861 | | 1,328,000 | | 1,210,126 |
| | 소계 | | 11124074 | | 13277881 | | 15398688 | | 18908800 | | 21250614 |
| | 비율 | | 48.46% | | 49.58% | | 48.78% | | 52.02% | | 49.37% |

| | | | | | | | | | | | |
|---|---|---|---|---|---|---|---|---|---|---|---|
| 인건비 | 시설장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조리원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보조원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사무원 | 0 | 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1 | 1,822,480 |
| | 4대보험 | | 540,183 | | 720,244 | | 720,244 | | 720,244 | | 720,244 |
| | 퇴직적립금 | | 453,798 | | 605,063 | | 605,063 | | 605,063 | | 605,063 |
| | 소계 | | 6,461,421 | | 8,615,227 | | 8,615,227 | | 8,615,227 | | 8,615,227 |
| | 총인건비 | | 17,585,495 | | 21,893,108 | | 24,013,915 | | 27,524,027 | | 29,865,841 |
| 수입 | | | 22,953,600 | | 26,779,200 | 0 | 31,561,200 | | 36,343,200 | | 43,038,000 |
| 수익 | | | 5,368,105 | 0 | 4,886,092 | 0 | 7,547,285 | | 8,819,173 | | 13,172,159 |

표 5-17 주·야간보호서비스 수익률 분석(장기요양요원의 급여 비율 조정)

- 해당 기준 적용 시, 이용자수 약 17인부터 수익은 발생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이용자 24인 이상이며, 30인이 넘어가면 인력구성이나 인건비 활용에 여유가 생김을 알 수 있음
- 예시는 보수적으로 작성되었음. 이용자가 모두 5급 대상자이고 18시 이후(야간) 이용이 없는상태에서 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5급 이상 4급이나 3급 대상자가 늘고 야간 이용이나 월 이용일수가 늘면 수익 구조도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임

• 인건비이외에 예상되는 지출 항목

-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홍보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시설유지비, 각종렌탈료, 직원복지후생비
- 식재료비, 간식비, 의료비는 비급여로 처리되기 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자부담으로 부담, 프로그램사업비는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비(추가 지원금)로 처리함

**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 할인**

• 전기 할인 : 주택용 30%, 일반용 30%,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 신청방법 = 한국전력 지역별 지사 / 연락처 국번없이 123 ⇒ 온라인 접수 가능

• 가스 할인 : 사회복지시설이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인 경우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함
- 신청방법 = 각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 불가

⇒ 건물내에서 다른 시설과 전기-가스가 분리 설비되어 있어야 할인을 받을수 있음

## 5.4 비즈니스 모델 확정 및 로드맵 구축

### 1) 개요

● **필요성**

-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협의가 필요함
- 법적기준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고 공사 시점에 따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시공 시점에 맞추어 사업의 진행을 계획하여야 함

●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수립

### 2) 마을관리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확정

●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서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여 행정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함

〈OO마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제안서〉

- 사업명
- 사업의 필요성 & 배경(환경분석을 근거로 작성)
- 사업의 목적
- 고객 분석(목표 고객과 고객의 니즈)
- 서비스 내용
- 수익분석
- 거점시설 활용 계획
- 서비스 인력 확보 계획
- 사업 진행 로드맵
- 사업의 효과 및 확장 (예상 매출, 고용, 지역사회 효과, 연관 사업 확대등)

● **지역사회 공론화 및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비전과 돌봄사업의 방향 및 지역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설명회 진행함
- 지역사회 직능단체 및 지역의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현장에 따라서는 추가적 선택하도록 함

• 주민협의체 혹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로 합의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이 지역 안에서 공공성을 위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의 거버넌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협의 과정도 중요함

- 거점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이 지원금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과 대부분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시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돌봄서비스 사업이 사적인 사업이 아닌 공공적 사업임이 강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공간 설계 및 사업의 로드맵 구축

#### ● 공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로드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기준으로 시설기준에 맞는 공간 설계 변경이 필요함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2호)를 기준으로 실내 공간과 인테리어 규정을 확인 하여야 함 ⇒ 안전 설비 기준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대변경의 경우 변경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대변경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함

#### ● 주·야간보호서비스사업 실행을 위한 로드맵

• 단계별 절차에 대한 로드맵 구축

- 공간설계 및 세부 공간 계획 : 거점시설 착공전에 변경 내용의 수정이 완료되어야만 함
- 총회까지의 일정 수립 : 총회 전 돌봄서비스에 맞게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함
- 공간 완성 및 시설 인가에 관한 로드맵 구축 : 필요서류 및 절차 과정을 고려하여 일정 수립

• 시설 운영에 관한 로드맵 구축

- 인적 지원 확보
  ⇒ 지역 내 인적 자원조사를 통한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 확보 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을 통한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인큐베이팅 계획
  ⇒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 계획 수립
  ⇒ 시설 운영 전 유사 서비스를 실험해보는 프로그램 계획
  ⇒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습 계획 수립
- 지원 체계 구축 계획
  ⇒ 사업 홍보와 연계 서비스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 내 네크워크 구축 계획
  ⇒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돌봄서비스 사업의 확장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계획

## 5.5 역량 강화

### 1) 역량강화 개요

#### ● 필요성

• 협동조합 주·야간보호시설
- 많은 수의 주야간보호시설을 개인이 운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함

• 참여하는 지역 주민의 현장 경험 부족
-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주민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경험한 분의 비율은 낮음
-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실습과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 목적

•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통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 2) 역량강화 계획

#### ● 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

• 교육의 목적 :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 교육 계획 수립 : 강의와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
- 사업의 실행 주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 예시(12회)

| 주제 | 횟수(예상) | 교육 방식 |
|---|---|---|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 1회 | 강의 및 워크숍 |
| 돌봄서비스 기본 이해(관련 법률, 규정) | 2회 | |
| 지역 자원조사 및 환경 분석 | 2회 | 워크숍 |
| 수익분석 및 운영 계획 수립 | 2회 | |
| 신규 프로그램 개발 | 4회 | |
| 돌봄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 | 1회 | |

## 인큐베이팅 교육

• 교육의 목적 :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실무와 실습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

• 교육 계획 수립 : 실습 위주
-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 실습이 필요
-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과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연계 작업이 필요

> 예를 들어 올해 주민공모사업에 5백만원 사업비 3팀을 선정한다고 할 때 돌봄사업단(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실행팀)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팀중 한 팀으로 선정되어 5백만원으로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행.

- 주민공모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연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

• 인큐베이팅 교육 예시

| | | |
|---|---|---|
| **현장교육** | - 현장 실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습 내용과 과정을 계획<br>- 현장의 전반적인 실무를 이해하고 실제 서비스를 실습해보는 과정으로 계획<br>-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
| **주민프로그램 사업** | 프로그램 기획 |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 결정 |
| | 프로그램 실행 | 미리 협의한 매뉴얼을 기준을 서비스 실행 |
| | 프로그램 평가 | 평가를 통해 보완점과 해결책을 도출 |

- 주민 프로그램 사업은 실행사업단(팀)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기획·실행

• 평가하는 전 과정을 진행
- 특정 장소에서 특정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식사 지원 등의 전 과정을 실험해보는 지역 노인대상 실습 과정

## 실무 인력 확보

•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면 지역의 훈련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수를 준비하거나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개설

**요양보호사**

- 자격취득 조건 :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으로 결정
  정신질환자, 마약,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제한
- 자격증 교육은 총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 1~2개월 소요
  경력자(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국비 지원 : https://www.hrd.go.kr/ 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검색하면 가까운 곳의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이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가능)를 발급받으면 무료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

## 5.6 시설 인가

### 1) 구비서류

| 구분 | 비고 |
|---|---|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부 | 부록으로 제공 |
| 일반현황,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 부록으로 제공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br>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 |
|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만 제출 |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br>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법인의 경우만 제출 |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 |

### 2) 진행절차

• 진행 절차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 ) → 민원접수 (7일내) →

서류검토 (시설 및 인력기준) → 현장실사 → 설치신고필증 교부

-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고 준비하여야 함

## 5.7 홍보 & 마케팅

### 1) 개요

● **필요성**

- 시중의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다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이 필요

● **목적**

-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 마케팅 계획 수립

### 2) 홍보전략

● **동거 가족 중심 홍보**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수급자와 동거 여부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 주간보호이용자 가족 동거 여부 : 동거 67.4%, 비동거 32.6%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가족들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도움 영역에 따라 92.8%~95.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음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15.4%,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가 74.8%임
- 재가서비스이용자중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중 가장 큰 비중(65.1%)은 직계가족임
-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있어 동거 가족의 만족도가 크고 서비스 선택에 대한 의견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거 가족들을 타케팅으로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표 5-18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도움 정도

| 구분 | 매우도움(%) | 도움(%) | 보통(%) | 도움되지 않음(%) |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 56.7 | 38.7 | 4.4 | 0.0 | 0.2 |
| 정신적 부양주담 완화 | 57.1 | 38.5 | 4.1 | 0.2 | 0.2 |
|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 55.7 | 38.1 | 2.3 | 2.4 | 1.4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표 5-1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자

| 구분 | 면제(%) | 수급자 본인(%) | 수급자의 배우자(%) | 자녀중 한명이 부담(%) | 자녀공동 부담(%) | 기타 |
|---|---|---|---|---|---|---|
| 주·야간보호 | 8.9 | 15.4 | 7.5 | 38.9 | 28.4 | 0.9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표 5-20
(재가서비스이용자중)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구분 | TV, 신문, 인터넷 | 직계가족 | 친인척 | 이웃지인 | 장기요양 기관직원 | 기타 |
|---|---|---|---|---|---|---|
| 주야간보호 | 4.3 | 65.1 | 2.2 | 12.1 | 10.9 | 5.4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 **지역사회를 통한 홍보**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6.3% 의 이웃지인이며 친인척과 직계가족까지 포함되는 관계망으로 통한 경로로 확대하면 51.6%로 확대됨
- 재가서비스이용자 중 장기요양기관 계약 시 유선 고려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6.4%의 소개 추천임
- 지역사회에서 친근한 지원의 추천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함
- 지역사회 네크워크를 활용한 홍보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표 5-2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구분 | TV, 신문, 인터넷 | 직계가족 | 친인척 | 이웃지인 | 장기요양 기관직원 | 기타 |
|---|---|---|---|---|---|---|
| 주야간보호 | 18.4 | 18.4 | 6.9 | 26.3 | 13.2 | 16.9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표 5-22
(재가급여이용자중)
장기요양기관 계약시
우선 고려사항

| 구분 | 비용 | 물리적 환경 | 인력 수준 | 평가 평판 | 거리 | 소개 추천 | 거리 |
|---|---|---|---|---|---|---|---|
| 방문요양 | 11.1 | 5.0 | 27.9 | 5.7 | 8.2 | 36.4 | 5.7 |
| 방문목욕 | 16.8 | 4.8 | 27.4 | 7.1 | 1.2 | 35.6 | 4.3 |
| 방문간호 | 15.7 | 5.7 | 11.4 | 6.3 | 21.9 | 41.5 | 8.6 |
| 주·야간보호 | 8.2 | 15.1 | 17.6 | 7.1 | 21.4 | 24.4 | 6.5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 3) 상황 인식과 방향 제시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장기요양기관 계약 시 우선 고려사항은 거리 다음으로 인력수준과 물리적 환경
  ⇒ 근무자 역량강화와 적절한 돌봄 피드백이 중요함

표 5-2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기관 계약시
우선 고려사항

| 구분 | 비용 | 물리적 환경 | 인력 수준 | 평가 평판 | 거리 | 소개 추천 | 거리 |
|---|---|---|---|---|---|---|---|
| 주·야간보호 | 12.3 | 17.2 | 19.6 | 13.0 | 20.5 | 13.0 | 4.3 |

〈출처〉 2019년 기준 통계청 참조

- 지역사회 수요조사을 통한 지역 대상자 맞춤형 환경 조성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물리적, 소프트워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목욕 특화형, 족욕 특화형, 인지 프로그램 특화형, 소규모 프로그램 특화형 등 각 지역의 서비스 대상자들의 선호에 맞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5.8 정보 공개 및 서비스 평가

### 1)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4조

● **공개할 내용**

-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 장기요양시설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종류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전문인배생책임보험(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손배보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기관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함

### 2) 사례관리

**사례관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촉진·회복·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2

### ● 사례관리의 목적

-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 강화 ⇒ 자립적 활동력 강화
  - 사회적 관계 회복 ⇒ 관계망(지지망)의 확대
- 연속적인 보호망 구축
  -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통합성/접근성 증대
  - 다양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지 자원 연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정보, 등급, 절차 등)을 확인하고 지원
- 성과관리
  -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정도를 통해 서비스의 성과와 평가 관리

### ● 사례관리 운영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
- 사례관리 회의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회의록 작성 (회의록 양식 부록 참조)
  - 필수 기재사항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회의 결과를 반드시 1개월 내 재가급여에 반영하여야 함

## 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자의 기준에서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지표로 활용

## ● 서비스 평가 주요 지표 (공단에서의 평가매뉴얼 기준)

-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서비스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구강 위생을 제공받고 있는가
  ⇒ 세수, 양치질에 대한 도움이 적절한가
- 서비스 이용자가 이동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있는가
  ⇒ 운행시간이 잘 지켜지는가
  ⇒ 차량 이동에 불편한 점이 없는가
- 서비스 제공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이용자 가족)의 만족도를 위해 노력하는지
  ⇒ 서비스 내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한지
  ⇒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노력이 충분한지
  ⇒ 서비스가 친절한가
  ⇒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느정도인가

## ● 평가 방식

- 설문지를 통한 평가 자료 확보
- 서비스 이용자용과 서비스 이용자 가족용을 따로 만들어 활용

# 6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 6.1 거버넌스

### 1) 민관거버넌스의 개요

● 필요성

- 거점시설을 활용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주민사업 전반을 위탁 운영하는 지원조직, 그리고 돌봄서비스 사업을 직접 운영할 주민들간의 민관거버넌스는 사업의 진행 초기부터 사업의 실행 단계를 넘어서까지 긴밀하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안착화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함

● 목적

-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한 체계 구축

### 2) 주체별 역할

-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주체별 역할을 나누고 각 주체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함

- 사업의 단계별로 핵심 실행 주체가 달라짐

  · 거점시설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거점시설 조성 단계에서는 지원조직이, 거점시설 운영 단계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핵심주체의 역할을 가짐.

표 6-1
주체별 역할

| 구분 | 역할 |
|---|---|
| 행정 | • 지역조사(수요조사,자원조사) = 지원조직과의 협의 및 역할 분담<br>- 돌봄 서비스를 위한 기초 조사<br>(지역내 돌봄 서비스 수요조사와 지역사회 자원조사)<br>• 노인복지과와 협의(인가와 관련된 내용)<br>-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관련 행정 지원<br>• 거점시설 설계 반영<br>- 필요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br>- 법적 요건에 맞도록 거점시설 설계에 반영 |

| | |
|---|---|
| 지원조직 | •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과의 지속적인 협의<br>• 도시재생 사업 전 과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계획 수립<br>- 초기 주민 의제 도출, 비즈니스 기본 모델 도출에서부터, 돌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계, 운영계획 및 수익구조 분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인큐베이팅 예산 및 실행 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로드맵 구축<br>• 교육 예산 수립과 교육 사업 실행 |
| 주민 | • 돌봄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주체 발굴<br>- 돌봄 서비스 산업 운영 경험자, 실무 업무 경험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조직화<br>• 돌봄 서비스 사업화 계획 수립<br>- 지원조직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계획은 사업실행 계획 수립<br>• 지역사회 홍보<br>-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지역사회 동의와 협력 도출<br>- 돌봄 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확보를 위한 홍보<br>• 지역사회 네트워크<br>- 돌봄 서비스 사업의 지역 내 대상자 확보 및 지원의 역할을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 연대 사업<br>•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br>-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실무 운영진이 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나누어 운영<br>- 행정과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대 (주간보호 → 주거 지원, 방문 요양, 먹거리 지원 서비스 등으로 확대) |

## 6.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범위와 역할은 대상지의 상황에 맞게 기획**

- 대상지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구역도 다르고 돌봄사업의 이용자 지역 범위 등도 상이하게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설정. 기초지자체 혹은 읍면동단위를 지켜서 지역을 설정할 필요 없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에 따라 설정함

### 1)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성과 영업력 확장**

-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평판과 소개가 홍보물 제작과 광고보다 중요한 역할을 가짐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적 홍보가 더 효율적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마을관리조합의 돌봄 사업이 더 공공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적 방향이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안에서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발전적 방향임
-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의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함
- 거점시설 운영 단계에서부터 거점시설을 활용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해지고 뉴딜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확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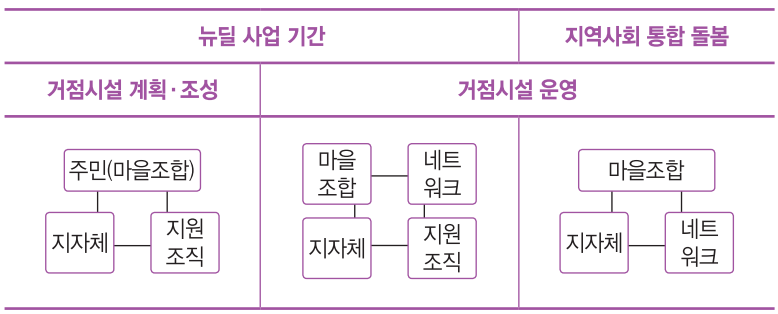


##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의 지역 기반 강화**

- 공공적 사업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긍정적 이미지를 생산함
- 마을의 다양한 사업(먹거리, 청소, 교육, 문화)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함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지역 내 연대 체계 구축**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돌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대 체계를 구축함

### 3)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

● **지역사회노인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 가칭 '지역사회노인돌봄추진단'과 같은 자문기구 구성함
- 자문기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 지역 내 직능단체 전·현직 대표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함
- 자문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돌봄 서비스 사업 발전 방향 및 의견을 개진함

  ⇒ 돌봄 서비스 사업의 지역내 확산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연계 방법 논의함

● **마을관리협동조합 중심 지역사회네트워크 조직**

- 지자체와 지역의료복지 기관, 중간지원조직, 주민 직능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을 모색함

그림 6-1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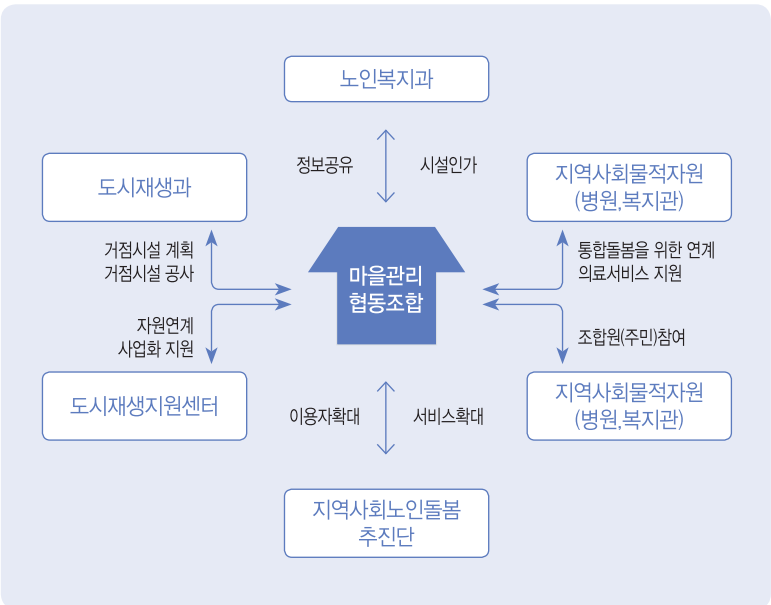

# 7 지속가능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장

그림 7-1
사업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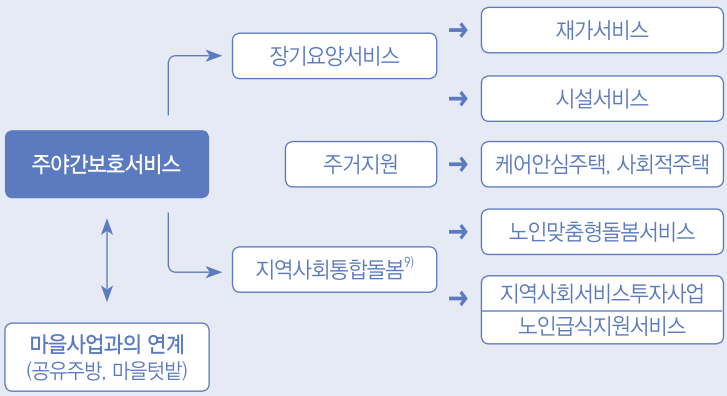


- 중앙정부 정책 사업인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 제도적 기반(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 대상자 모집만 원활하면 거점시설을 가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기 용이함
  ⇒ 재가서비스는 주·야간보호,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으로 세분화됨
  ⇒ 시설서비스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분화됨
- 지방정부의 정책사업인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자체마다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협의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움.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거지원는 공공영역의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주거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제도임
- 기존 마을조합의 사업 혹은 거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조합의 사업과 지역 내 돌봄서비스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확장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음

9)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같은 지자체 중심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이챕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이외의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기술함

## 7.1 확장의 필요성

### 1) 필요성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역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이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지역이 생산하여 공급하고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취지와 유사함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참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함

**●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대상자 연계 및 모집이 용이해지고, 공간과 인력의 활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무 공간도 공유 가능함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 돌봄서비스 내 먹거리 서비스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먹거리 사업단이 운영할 수도 있고, 돌봄 서비스 내 프로그램 사업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교육서비스 사업단이나 텃밭 등에서 운영할 수도 있음

## 7.2 장기요양서비스 확장

> 장기요양서비스
>
>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거점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적합함

### 1) 재가서비스의 확장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 ● 방문요양서비스

-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 공간 및 설비의 부담이 적고 서비스 제공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야간보호서비스의 확장 모델로 적합함

• 시설 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 반드시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있어야 함
  ⇒ 다른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시설) 운영시 사무실을 병용하여 사용 가능함
- 방문요양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인력 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 가능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함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표 7-2
방문요양
인력기준표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
| 1명 | 1명<br>(수급자 15명 이상) | 15명 이상<br>(농어촌지역[10]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참조

10)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표 7-3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1년 기준

| 분류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10분 이상 |
|---|---|---|---|---|---|---|---|---|
| 급여비용 (원) | 14,750 | 22,640 | 30,370 | 38,340 | 43,570 | 48,170 | 52,400 | 56,320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 2) 시설(주거)서비스의 확장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 필요 공간, 설비, 필수 인력등이 훨씬 많이 필요한 요양원보다 규모가 작고 공간이나 필요인력이 적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적합함

• 시설 기준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확보하여야 함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구분 /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 | ○ | | |

표 7-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표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 지도의 역할을 수행함
-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함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하여야 함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표 7-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기준표

| 직종별 /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명 | | | 1명 |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서비스 내용

-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 유지하여야 함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1일당)
-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산정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가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야간직원배치, 인력추가배치등)

표 7-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2021년 기준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3,050 |
| | 2등급 | 58,510 |
| | 3~5등급 | 53,93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72,520 |
| | 3~5등급 | 66,870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 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로 정부의 정책 사업 중 노인 주택관리지원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케어안심주택

**케어안심주택**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고 돌봄 대상의 복합적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 제공

-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함
- 입주자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임대료는 주거급여 수준으로 적절하게 결정함

〈사례〉

1)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은 지하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금천구가 서울특별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력하여 도입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

- 총 4층 규모로 1층 주차장, 2층 경로당, 3 · 4층은 주거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1층 주차장은 지역주민과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함
- 보린두레(2호점), 보린햇살(3호점), 보린함께(4호점) 총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주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47가길38 보린주택1호점
• 입주대상: 남녀공용
• 면적: 전용 431.8㎡ / 공용 18.6㎡
• 총 주거인원: 총 16명 / 총 16호 / 총 16실
• 집구조: 원룸(분리형) / 별도 커뮤니티 공간
• 보증금: 9,410,000원~22,740,000원
• 월세: 52,600원~127,000원

사진 7-1 보린주택

〈출처〉 서울시 공동체 주택 플렛폼 https://soco.seoul.go.kr

2) 세종시 번암리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거점시설에 조성되는 2인가구 8호의 케어안심주택을 운영을 협의 중

•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및 지방공사, LH 등)가 매입한 주택 또는 개량한 주택을 비영리법인 등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일정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 공동주택사업자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하고,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전대공급이 가능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38조(사회적 주택 운영 특례)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함

〈사례〉
1) 1)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 24 / 10호 /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운영
2)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4길 19-4 / 12호 / '(사)가치있는 누림'이 운영
3)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39 / 8호 /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가 운영

▶ 운영방식

- 임대료와 관리비로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 주택관리서비스는 입주자 관리(입주자 선정·계약, 입퇴거 관리, 관리비 징수, 시설물 관리, 수선, 청소, 소독)
- 주택관리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

## 7.3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의 확장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지역사회에서 수행함으로써 지역내 공공적 역할을 구행하고 일자리를 창출

- 노인돌봄서비스는 중앙정책(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법적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를 실행하면 비용이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사업 초기의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모두 아우를 수 없고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 소외 대상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확장

● **서비스 개요**

- 자격: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대상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 ●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

• 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가능)

• 시설기준

표 7-7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기관 시설기준

| 확보필요공간 | 기준 | 규모 |
|---|---|---|
|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시·구·군에서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
| 상담공간 | 전용공간 | |
|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br>또는 별도 공간계획 마련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br>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출처〉 2021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1년~최대 3년

-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위탁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가능함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재위탁 불가함

## 2) 지자체별 노인 돌봄 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사업의 예시

-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 1인가구 돌봄 서비스
- 노인정서 치유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용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자체에 요구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역에 요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방식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수행기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

● **노인 급식 지원 서비스**

-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 경기도의 경우 158개소가 지정 운영(2019년 12월 기준)
  ⇒ 주 1회~3회 : 도시락(1식 3,000원), 밑반찬(주1회 6,000원)(대구광역시 2021년 단가)
- 노인 급식서비스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식당이나 공유주방 사업을 진행할 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

## 7.4 마을사업과의 연계

### 1) 공유주방, 마을식당

- 노인돌봄시설에 급식 지원
-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의 경우 외부 급식기관을 이용시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 외부 급식기관을 많이 활용 가능함
- 지자체의 노인 급식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함
- 지역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들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식단 제공에 유리함

2) 마을텃밭

- 돌봄서비스의 영역에서 마을 텃밭을 활용할 수 있음
- 텃밭에서 체험, 힐링,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서비스 실행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사업, 지자체의 바우처 사업과 연동하여 수익 사업 실행할 수 있음

**〈프로그램 예시〉**

| | |
|---|---|
| · 나만의 밀짚모자 만들기 | · 옥수수 및 페츄니아 포트 심기 활동 |
| · 텃밭 이름표 만들기 | · 다육이 화분 만들기 |
| · 내 꽃밭 사진 찍기 | · 그림 그리기 |
| · 텃밭 함께 산책하기 | · 허브 비누 만들기 |
| · 토피어리 만들기 | · 수확하기 |

부록

## 참고자료


도시재생 붐업사업으로서 거점시설 조성 전·후 지역이미지 변화 및 시설 효과 분석
2018. 서광영·박진아, 서울연구원.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 마련 연구 2019.0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부산시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_자체_추진_가이드북 보건복지부 2020.07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강혜규 2019.
도시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202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 12. 28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대한 고찰. 2019. 차성란


## 필수 법률 및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6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 [고시 제2020-30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5.1.] [고시 제2021-119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0. 2. 10.] [고시 제2020-3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17.] [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8. 1.] [고시 제2018-146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 7.] [고시 제2019-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시행 2020. 5. 6.] [보건복지부령 제724호]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2호)(20201022)

## 서식 자료 사이트

• 서식자료 :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 필수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신청서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시설급여/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주 · 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별표1]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별표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 (공정거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 □안내)서 (공정거래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공정거래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일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
사례관리 회의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

**노인복지시설의 기준**(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작성)

<table>
<tr><th>종류</th><th>시설</th><th>설치목적</th><th>이용 대상자</th></tr>
<tr><td rowspan="3">노인<br>주거<br>복지<br>시설</td><td>양로<br>시설</td><td>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td><td rowspan="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br>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br>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br>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br>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td></tr>
<tr><td>노인<br>공동<br>생활<br>가정</td><td>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td></tr>
<tr><td>노인<br>복지<br>주택</td><td>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td><td>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td></tr>
<tr><td rowspan="2">노인<br>의료<br>복지<br>시설</td><td>노인<br>요양<br>시설</td><td>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td><td rowspan="2">노인성 질환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br>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br>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br>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td></tr>
<tr><td>노인<br>요양<br>공동<br>생활<br>가정</td><td>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td></tr>
</table>

| 종류 | 시설 | 설치목적 | 이용 대상자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 노인 복지관 |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0세 이상의 자 |
|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0세 이상의 자 |
| | 노인 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0세 이상의 자 |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 방문 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br>나.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br>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br>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br>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br>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br>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
| | 주·야간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
| | 단기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
| | 방문 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도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 | 방문 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 | 재가 노인 지원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서비스 | |
| | 복지 공구 지원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공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 |

| 시설 | 설치목적 |
|---|---|
| 노인보호<br>전문기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br>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br>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br>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br>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br>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br>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br>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br>8.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 노인일자리<br>지원기관 |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 ·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br>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 지원, 창업 ·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br>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 학대피해<br>노인<br>전용쉼터 |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br>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br>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br>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지원<br>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br>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중심형 사회적경제기업의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모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